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구보

http://www.seo.incheon.kr/

선람	기관의장		제1845호 2024. 6. 3.(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05호 뷰티풀파크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08호 석남동 444-4번지 황해아파트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행위제한 고시 ——— 45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10호 공원마을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 47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12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49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147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53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홍보정책실 [032-560-4144]**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4-105호

뷰티풀파크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뷰티풀파크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 6. 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요 변경 내용

○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금회 사업에 한함)

- 서구 오류동 1620-1번지 일원에 위치한 공영차고지 내 수소충전소 조성 사업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인천광역시장)

○ 지구단위계획 변경

-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명칭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2-57호(2022.04.27.)에 따른 산업단지 명칭 변경 반영(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 뷰티풀파크 지구단위계획구역)
- ② 건축물 허용용도
  : 공영차고지 내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허용용도 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뷰티풀파크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변경, 금회 사업에 한함)

가. 전 체

○ 성 명 : 인천도시공사 사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나. 금 회

○ 성 명 : 인천광역시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 없음)

가. 사업의 목적 (변경 없음)

○ 검단신도시 및 인천 지역 내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주공장의 부지 확보

○ 무분별하게 산재되어 있는 공장지대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개발

○ 수도권 서부지역내 중소기업을 위한 대규모의 新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여 균형발전과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인천 서북부 지역의 균형개발 도모

나. 사업개요 (변경 없음)

○ 근거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사 업 비: 14,038억원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2,250,719.2**	**100.0**	
산 업 시 설 용 지	**1,381,455.0**	**61.3**	
일 반 공 장 용 지	1,328,186.8	59.0	
임 대 공 장 용 지	17,205.6	0.7	
지 식 산 업 센 터 용 지	26,441.9	1.2	
재 활 용 시 설 용 지	9,620.7	0.4	
지 원 시 설 용 지	**57,033.4**	**2.5**	
지 원 시 설 용 지	52,573.4	2.3	
주 유 소 용 지	2,441.5	0.1	
공 공 문 화 · 복 지 시 설	2,018.5	0.1	
주 거 용 지	**5,693.6**	**0.3**	22세대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공 공 시 설 용 지	**806,537.2**	**35.9**	
공 원 · 녹 지	**226,270.8**	10.1	
공 원	66,852.2	3.0	3개소
녹 지	138,754.4	6.2	11개소
저 류 시 설	20,664.2	0.9	4개소
기 타 시 설 용 지	**580,266.4**	**25.8**	
폐 기 물 처 리 시 설	38,680.9	1.7	1개소
폐 수 종 말 처 리 시 설	40,088.4	1.8	1개소
빗 물 펌 프 장	4,139.6	0.2	1개소
변 전 소	3,993.1	0.2	1개소
주 차 장	23,587.5	1.0	7개소
공 영 차 고 지	9,998.7	0.4	1개소
도 로	459,778.2	20.5	

주) 1. 공원은 공원내 시설로 중복 지정된 저류시설 1개소(A = 20,613.0㎡) 포함면적임

○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 주요유치업종
- 유치업종 배치계획

중분류	업 종 명	면적(㎡)	구성비(%)	비고
-	합 계	1,371,834.3	100.0	
16 3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132,655.5	9.7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68,047.9	5.0	
24	1차 금속 제조업	48,312.4	3.5	
25 29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1]	23,146.9	1.7	
26 27 28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공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130,891.8	9.5	
29 2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	599,320.3	43.7	
10	식료품 제조업[3]	29,476.3	2.1	
-	임대공장용지[4]	17,205.6	1.3	
-	복합업종[5]	296,335.7	21.6	
-	지식산업센터[6]	26,441.9	1.9	

주) 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에 청정표면처리센터 (23,146.9㎡) 포함

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중 (25922)도금업 제외

3. 식료품제조업 중 (1012)육류가공·저장처리업, (1021)수산식물 가공·저장처리업, (1071)떡·빵·과자류 제조업, (1073)면류, 마카로니·유사식품제조업, (1079)기타 식료품제조업' 에 한함

4. 제시된 9개 업종에 한해 입주를 희망하는 사업체에 임대

5. (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991)아스콘 제조업, (23322)레미콘 제조업 제외), (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3)기타 제품 제조업

6. 제시된 9개 업종과 (10)식품 제조업, (11)음료 제조업, (13)섬유제품제조업, (14)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33)기타 제품 제조업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금회 사업에 한함)

가. 전 체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243번지 일원

○ 면 적 : 2,250,719.2㎡

나. 금 회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20-1번지 일원

○ 면 적 : 9,998.7㎡ (공영차고지, 면적 변경없음)

5. 사업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변경, 금회 사업에 한함)

가. 전 체

○ 시행방법 : 수용방식

○ 시행기간 : 2006년 ~ 2014년 3월 31일 (준공)

나. 금 회

○ 시행방법 : 공동개발방식

○ 시행기간 : 2024년 ~ 2026년 12월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 각호의 사항 (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뷰티풀파크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243번지 일원	2,250,719.2	인고-제242호 (06.12.26.)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243번지 일원	2,250,719.2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2-57호 (2022.04.27.)에 따른 산업단지 명칭 변경 반영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대한 결정 (변경)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 없음)

▨ 용도지역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총 계		**2,250,719.2**	**100.0**	
	주거지역	**20,991.3**	**0.9**	
	제1종일반주거지역	20,991.3	0.9	
	공 업 지 역	**2,229,727.9**	**99.1**	
	일 반 공 업 지 역	2,126,418.1	94.5	
	준공업지역	103,309.8	4.6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변경)

▨ 도로시설 총괄표 (변경 없음)

(단위 : 개, m, ㎡)

구 분			폭원(m)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비고
합 계				65	22,581	459,778.2	
일반도로	광로	소계	-	1	1,590	63,600.0	
		1류	-	-	-	-	
		2류	-	-	-	-	
		3류	40	1	1,590	63,600.0	
	대로	소계	-	6	5,145	128,625.0	
		1류	-	-	-	-	
		2류	-	-	-	-	
		3류	25	6	5,145	128,625.0	
	중로	소계	-	48	14,848	241,309.0	
		1류	20~22	9	3,448	74,772.0	
		2류	15	30	9,637	144,855.0	
		3류	12	9	1,763	21,682.0	
	소로	소계	-	10	998	8,531.0	
		1류	10	4	507	5,051.0	
		2류	8	1	201	1,608.0	
		3류	6	1	14	84.0	
특수도로		3류	6~8	4	276	1,788.0	보행자도로
기 타						17,713.2	가감속차로 등

▨ 도로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광로	3	23	40 ~52	주간선 도로	7,167 (1,590)	동측행정구역계 (원당동 8-2답)	중로2-495호선 (마전동 499-3도)	일반도로		인고 제118호 '98.6.12.	
기정	대로	3	58	25 ~30	주간선 도로	8,510 (969)	동측지구계 (마전동 290-17)	광로3-23호선 (불로동 326-4)	일반도로		인고 제118호 '98.6.12.	
기정	대로	3	114	25	보조간선 도로	2,762 (542)	지구계 (오류동1610-10)	서측행정 구역계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대로	3	115	25	보조간선 도로	1,320	광로 3-23	대로 3-114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대로	3	116	25	보조간선 도로	498	광로3-23	대로3-58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대로	3	117	25	보조간선 도로	1,319	광로 3-23	대로 3-114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대로	3	118	25	보조간선 도로	497	광로 3-23	대로 3-58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중로	1	140	20	집산도로	675 (298)	광로 3-23	대로 3-59 (오류동1695)	일반도로		인고 제182호 '00.10.14.	
기정	중로	1	362	22	집산도로	369	대로 3-117	대로 3-115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중로	1	363	22	집산도로	1,477	대로 3-117	지구계 (대로 3-64)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구분	규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중로	1	364	20	집산도로	244	광로 3-23	중로 1-363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중로	1	365	22	집산도로	371	대로 3-117	대로 3-115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중로	1	366	22	집산도로	117	대로 3-115	지구계 (오류동1623-9)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중로	1	367	22	집산도로	117	대로 3-115	지구계 (오류동1623-9)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중로	1	368	22	집산도로	291	광로 3-23	중로 1-363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중로	1	369	22	집산도로	164	중로 1-363	중로 2-655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중로	2	655	15	집산도로	993	중로 1-363	지구계 (오류동1636-2)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중로	2	656	15	집산도로	155	중로 1-363	중로 2-655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중로	2	657	15	집산도로	292	중로 1-363	중로 1-368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중로	2	658	15	집산도로	266	중로 1-363	중로 2-661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중로	2	659	15	집산도로	376	중로 1-363	중로 2-661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중로	2	661	15	집산도로	468	중로 1-368	중로 1-364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중로	2	662	15~21	집산도로	222	광로 3-23	중로 1-140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중로	2	663	15	집산도로	490	대로 3-58	중로 1-140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중로	2	664	15	집산도로	329	대로 3-118	중로 2-663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중로	2	665	15	집산도로	397	대로 3-118	중로 2-663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중로	2	666	15	집산도로	315	대로 3-117	중로 1-364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중로	2	667	15	집산도로	243	대로 3-118	중로 2-735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중로	2	668	15	집산도로	367	대로 3-118	대로 3-116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중로	2	669	15	집산도로	369	대로 3-117	대로 3-115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중로	2	670	15	집산도로	370	대로 3-117	대로 3-115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중로	2	671	15	집산도로	284	대로 3-117	중로 2-672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중로	2	672	15	집산도로	372	대로 3-117	대로 3-115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중로	2	673	15	집산도로	373	대로 3-117	대로 3-115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중로	2	674	15	집산도로	106	대로 3-58	유수지㉮ (오류동1644-5)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중로	2	675	15	집산도로	452	중로 1-369	중로 2-655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중로	2	735	15	집산도로	395	대로 3-58	중로 2-668	일반도로		인고 제35호 ´10.2.8.	
기정	중로	2	736	15	집산도로	322	대로 3-58	대로 3-58	일반도로		인고 제35호 ´10.2.8.	
기정	중로	2	737	15	집산도로	201	대로 3-58	중로 2-664	일반도로		인고 제35호 ´10.2.8.	
기정	중로	3	249	12	집산도로	383	중로 2-665	중로 2-665	일반도로		인고 제35호 ´10.2.8.	
기정	중로	3	250	12	집산도로	158	중로 1-363	중로 2-659	일반도로		인고 제35호 ´10.2.8.	

구분	규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중로	3	251	12	집산도로	158	중로 1-363	중로 2-659	일반도로		인고 제35호 ´10.2.8.	
기정	중로	3	392	12	국지도로	40	중로 2-662	중로 3-393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중로	3	393	12	국지도로	376	중로 1-140	지구계 (오류동 1665-2)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중로	3	394	12~16	국지도로	40	중로 1-140	지구계 (오류동 395-93)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중로	3	336	12	국지도로	118	대로 3-114	폐기물처리시설	일반도로		인고 제33호 ´13.2.28.	
기정	중로	3	337	12~15	국지도로	226	중로 2-666	중로 2-666	일반도로		인고 제33호 ´13.2.28.	
기정	중로	3	338	12	국지도로	264	중로 1-363	중로 2-656	일반도로		인고 제33호 ´13.2.28.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179	중로 2-663	소로 1-2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237	중로 3-394	소로 1-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60	소로 1-2	소로 1-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201	소로 1-1	지구계 (오류동369-5)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소로	1	가	10	국지도로	31	중로 1-140	중로 3-394	일반도로		인고 제33호 ´13.2.28.	
기정	소로	3	가	6	국지도로	14	지구계 (오류동1143)	지구계 (오류동1143)	일반도로		인고 제33호 ´13.2.28.	
기정	소로	3	1	6	특수도로	29	중로 1-140	소로 1-2	보행자 전용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소로	3	2	6	특수도로	78	중로 1-363	중로 2-675	보행자 전용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소로	3	3	6	특수도로	80	중로 2-655	중로 2-675	보행자 전용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소로	3	나	6~8	특수도로	89	광로 3-23	중로 2-666	보행자 전용도로		인고 제33호 ´13.2.28.	

▨ 주차장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	주차장	서구 오류동 1640-1	3,765.3	인고 제366호 ´08.12.29.	준공업지역
기정	㉯	주차장	서구 오류동 1658-9	3,883.5	인고 제366호 ´08.12.29.	준공업지역
기정	㉰	주차장	서구 오류동 1639-12	1,650.2	인고 제366호 ´08.12.29.	일반공업지역
기정	㉱	주차장	서구 오류동 1639-12	1,650.2	서구고시 제63호 ´17.6.5.	일반공업지역
기정	㉲	주차장	서구 오류동 1663-1	3,023.8	인고 제366호 ´08.12.29.	일반공업지역
기정	㉳	주차장	서구 오류동 1515-5	2,097.4	인고 제366호 ´08.12.29.	준공업지역
기정	㉴	주차장	서구 오류동 1644-9	2,694.2	인고 제366호 ´08.12.29.	일반공업지역
기정	㉵	주차장	서구 오류동 1630-9	4,822.9	인고 제366호 ´08.12.29.	일반공업지역

▨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자동차 정류장	공영 차고지	서구 오류동 1620-1 일원	9,998.7	-	9,998.7	인고 제366호 ´08.12.29.	일반공업 지역

▷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자동차정류장 (공영차고지)	• 위치(지번) 표시 변경 : 서구 오류동 1620-1 → 서구 오류동 1620-1 일원	• 오류동 1620-1번지 지번분할에 따른 위치(지번) 표시 변경

나) 공간시설 (변경 없음)

▨ 녹지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	㉮호 녹지	완충녹지	서구 오류동 1644-11	11,675.7	인고 제366호 ´08.12.29.	일반공업지역
기정	㉯	㉯호 녹지	완충녹지	서구 오류동 1655-8	18,573.1	인고 제366호 ´08.12.29.	일반공업지역
기정	㉰	㉰호 녹지	완충녹지	서구 오류동 1659-14 일원	5,634.6	인고 제366호 ´08.12.29.	제1종일반 주거지역
기정	㉱	㉱호 녹지	완충녹지	서구 오류동 1664	4,393.9	인고 제366호 ´08.12.29.	일반공업지역
기정	㉲	㉲호 녹지	완충녹지	서구 오류동 1636-3	2,858.6	인고 제366호 ´08.12.29.	일반공업지역
기정	㉳	㉳호 녹지	완충녹지	서구 오류동 1666 일원	52,095.9	인고 제366호 ´08.12.29.	일반공업지역
기정	㉴	㉴호 녹지	완충녹지	서구 오류동 1610-8 일원	16,959.2	인고 제366호 ´08.12.29.	일반공업지역
기정	㉵	㉵호 녹지	완충녹지	서구 오류동 1663-9 일원	2,061.1	인고 제147호 ´11.6.20.	일반공업지역
기정	㉶	㉶호 녹지	완충녹지	서구 오류동 1644-10 일원	4,738.5	인고 제366호 ´08.12.29.	일반공업지역
기정	⑥	당하1녹지	완충녹지	서구 오류동 1663-7 일원	25,800.5 (7,132.5)	서구고시 제22호 ´05.4.12.	일반공업지역
기정	⑦	당하2녹지	완충녹지	서구 오류동 1639-13 일원	48,741.3 (12,631.3)	서구고시 제22호 ´05.4.12.	일반공업지역

※ ( )는 산업단지내 위치 및 면적

▨ 공원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	㉯호공원	근린공원	서구 오류동 1656-4	10,970.2	인고 제366호 ´08.12.29.	일반공업지역
기정	㉱	㉱호공원	근린공원	서구 오류동 1665-2	10,869.3	인고 제366호 ´08.12.29.	일반공업지역
기정	㉰	㉰호공원	근린공원	서구 오류동 1613-1 일원	45,012.7	인고 제366호 ´08.12.29.	일반공업지역

다)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 없음)

▨ 전기공급설비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	변전소	서구 오류동 1636-1	3,993.1	인고 제366호 ´08.12.29.	일반공업지역

라) 방재시설 (변경 없음)

▨ 유수지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	유수지	저류시설	서구 오류동 1644-5	13,269.4	인고 제366호 ´08.12.29.	일반공업지역
기정	㉯	유수지	저류시설	서구 오류동 1636-2	7,280.1	인고 제366호 ´08.12.29.	일반공업지역
기정	㉰	유수지	저류시설	서구 오류동 1611-4	20,613.0	인고 제366호 ´08.12.29.	일반공업지역 (공원㉰와 중복결정)
기정	㉱	유수지	저류시설	서구 오류동 1611-20	114.7	-	일반공업지역

▨ 방수설비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	방수설비 (빗물펌프장)	서구 오류동 1665-1	4,139.6	인고 제147호 ´11.6.20.	일반공업지역

마) 환경기초시설 (변경 없음)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	폐기물 처리시설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서구 오류동 1610-3	38,680.9	인고 제366호 ´08.12.29.	일반공업지역

▨ 수질오염방시설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수종말 처리시설	서구 오류동 1610-4	40,088.4	인고 제366호 08.12.29.	일반공업지역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결정 (변경 없음)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없음)

▨ 공장용지 (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적(㎡)	위치	면적(㎡)	
공장용지 (Ⅰ)	Ⅰ 1	13,044.7	-	-	
	Ⅰ 2	63,725.0	-	-	
	Ⅰ 3	40,506.1	-	-	
	Ⅰ 4	37,562.9	-	-	
	Ⅰ 5	7,950.8	-	-	
	Ⅰ 6	17,421.4	-	-	
	Ⅰ 7	21,347.6	-	-	
	Ⅰ 8	69,255.4	-	-	
	Ⅰ 9	47,416.5	-	-	
	Ⅰ 10	69,649.6	-	-	○ 최소획지 : 1,650㎡
	Ⅰ 11	36,203.9	-	-	
	Ⅰ 12	73,111.5	-	-	
	Ⅰ 13	28,939.4	-	-	
	Ⅰ 14	28,528.8	-	-	
	Ⅰ 15	43,343.3	-	-	
	Ⅰ 16	40,820.7	-	-	
	Ⅰ 17	43,038.1	-	-	
	Ⅰ 18	8,275.6	-	-	
	Ⅰ 19	20,770.7	-	-	
	Ⅰ 20	46,854.2	-	-	
	Ⅰ 21	26,441.9	-	-	○ 지식산업센터용지

도면번호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적(㎡)	위치	면적(㎡)	
공장용지(Ⅰ)	Ⅰ22	58,701.6	-	-	
	Ⅰ23	19,230.1	-	-	
	Ⅰ24	13,653.4	-	-	○ 최소획지 : 1,650㎡
	Ⅰ45	16,732.9			
	Ⅰ25	35,656.4	-	-	
	Ⅰ26	31,269.3	-	-	
	Ⅰ27	8,323.9	-	-	
	Ⅰ46	24,150.3			
	Ⅰ28	18,080.8	-	-	
	Ⅰ29	17,440.3	-	-	
	Ⅰ30	17,205.6	-	-	○ 임대부지 ○ 최소획지: 1,650㎡
	Ⅰ31	16,586.5	-	-	
	Ⅰ37	11,335.9	-	-	
	Ⅰ38	18,140.4	-	-	
	Ⅰ39	6,641.2	-	-	
	Ⅰ32	29,649.1	-	-	
	Ⅰ33	11,435.2	-	-	○ 최소획지 : 1,650㎡
	Ⅰ47	21,902.1			
	Ⅰ34	31,078.1	-	-	
	Ⅰ35	42,749.2	-	-	
	Ⅰ36	15,806.7	-	-	
	Ⅰ40	3,876.3	-	-	
	Ⅰ41	10,957.0	-	-	
	Ⅰ42	21,769.6	-	-	
	Ⅰ43	28,754.6	-	-	
	Ⅰ44	7,806.3	-	-	
	Ⅰ48	23,146.9	-	-	○ 지식산업센터용지
	Ⅰ49	25,546.5	-	-	○ 최소획지: 1,650㎡
합 계		1,371,834.3	-	-	

▨ 단독주택용지 (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 고
			위치	면적(㎡)	
단독주택 (H)	H 1	1,799.3	①	254.5	
			②	241.5	
			③	243.9	
			④	244.1	
			⑤	244.4	
			⑥	243.0	
			⑦	327.9	
	H 2	2,518.2	①	259.8	
			②	247.5	
			③	248.6	
			④	247.7	○ 합병불가
			⑤	255.8	○ 분할불가
			⑥	261.6	
			⑦	247.3	
			⑧	247.3	
			⑨	247.4	
			⑩	255.2	
	H 3	1,376.1	①	281.8	
			②	273.9	
			③	273.8	
			④	273.7	
			⑤	272.9	
합 계		5,693.6		5,693.6	

▨ 지원시설용지 (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지원시설용지 (S)	S 2	18,408.6	①	2,028.7	
			②	2,608.1	
			③	674.0	
			④	677.0	
			⑤	627.9	
			⑥	595.8	
			⑦	642.1	
			⑧	660.8	
			⑨	660.0	
			⑩	650.9	
			⑪	596.0	
			⑫	613.5	
			⑬	672.3	
			⑭	2,050.1	
			⑮	984.6	
			⑯	978.2	
			⑰	945.0	
			⑱	1,743.6	
	S 2a	4,527.3	①	706.7	
			②	520.1	
			③	519.5	
			④	512.5	
			⑤	697.4	
			⑥	520.9	
			⑦	521.7	
			⑧	528.5	
	S 2b	4,662.5	①	526.9	
			②	520.1	
			③	519.4	
			④	800.6	
			⑤	514.0	
			⑥	521.1	
			⑦	521.8	
			⑧	738.6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 고
			위치	면적(㎡)	
지원시설용지 (S)	S 3	7,919.6	①	3,959.2	
			②	3,960.4	
	S 3a	8,580.8	①	885.7	
			②	819.7	
			③	823.1	
			④	818.2	
			⑤	1,456.2	
			⑥	1,472.7	
			⑦	1,012.6	
			⑧	627.5	
			⑨	665.1	
	S 3b	5,606.0	①	565.1	
			②	560.1	
			③	560.1	
			④	560.0	
			⑤	564.9	
			⑥	557.8	
			⑦	560.0	
			⑧	560.2	
			⑨	559.9	
			⑩	557.9	
	S 5	2,868.6	①	1,434.8	
			②	1,433.8	
합 계		52,573.4		52,573.4	

▨ 재활용시설용지 (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 고
			위치	면적(㎡)	
재활용시설(RE)	RE	9,620.7	①	9,620.7	
합 계		9,620.7	-	9,620.7	

▨ 주유소용지 (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 고
			위치	면적(㎡)	
주유소(O)	O 1	2,441.5	①	2,441.5	
합 계		2,441.5	-	2,441.5	

▨ 주차장 (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 고
			위치	면적(㎡)	
주차장(P)	P 1	3,765.3	①	3,765.3	
	P 2	3,883.5	①	3,883.5	
	P 3	1,650.2	①	1,650.2	
	P 8	1,650.2	②	1,650.2	
	P 4	3,023.8	①	3,023.8	
	P 5	2,097.4	①	2,097.4	
	P 6	2,694.2	①	2,694.2	
	P 7	4,822.9	①	4,822.9	
합 계		23,587.5	-	23,587.5	

▨ 공영차고지 (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 고
			위치	면적(㎡)	
공영차고지(PP)	PP	9,998.7	①	9,998.7	
합 계		9,998.7	-	9,998.7	

▨ 유수지 (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 고
			위치	면적(㎡)	
유수지 (WR)	WR 1	13,269.4	①	13,269.4	
	WR 2	7,280.1	①	7,280.1	
	WR 3	20,613.0	①	20,613.0	
	WR 4	114.7	①	114.7	
합 계		41,277.2	-	41,277.2	

주) ㉰호유수지(WR3)은 ㉮호공원내 시설과 연계설치(A: 20,613㎡)

▨ 변전소 (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 고
			위치	면적(㎡)	
변전소(TS)	TS	3,993.1	①	3,993.1	
합 계		3,993.1	-	3,993.1	

▨ 방수설비(빗물펌프장) (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 고
			위치	면적(㎡)	
방수설비(RP)	RP	4,139.6	①	4,139.6	
합 계		4,139.6	-	4,139.6	

▨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 고
			위치	면적(㎡)	
폐기물처리시설(W)	W	38,680.9	①	38,680.9	
합 계		38,680.9	-	38,680.9	

▨ 폐수종말처리장 (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폐수종말처리시설 (WDP)	WDP	40,088.4	①	40,088.4	
합 계]		40,088.4	-	40,088.4	

▨ 공공문화·복지시설 (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공공문화·복지시설 (CW)	CW1	2,018.5	①	2,018.5	
합 계		2,018.5	-	2,018.5	

2) 건축물에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 공장용지 (변경 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공장용지 (I)	I5, I9, I11, I32, I33	용 도	허용용도	○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70%이하	
		용 적 률	○ 350%이하	
		높이(층)	-	
		배 치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	
		형 태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사용 ○ 옥상부분은 냉각탑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주 차	○ 시설면적 190㎡당 1대, 기계식주차장 불허 ○ 대형주차면(3.25m × 14.0m)을 전체 주차면의 5% 이상 확보하며, 최소 1개면 이상 확보할 것	
		색 채	주조색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주조색(권장)
			보조색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보조색(권장)
			강조색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강조색(권장)
		건축선	-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공장용지(I)	I2, I7, I25, I26, I28, I31, I34, I36, I45, I46, I47	용 도	허용용도	○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표준산업분류- 383)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70%이하	
		용 적 률	○ 350%이하	
		높이(층)	-	
		배 치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	
		형 태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사용 ○ 옥상부분은 냉각탑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주 차	○ 시설면적 190㎡당 1대, 기계식주차장 불허 ○ 대형주차면(3.25m × 14.0m)을 전체 주차면의 5% 이상 확보하며, 최소 1개면 이상 확보할 것	
		색 채	주조색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주조색(권장)
			보조색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보조색(권장)
			강조색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강조색(권장)
		건축선	-	
공장용지(I)	I1, I3, I4, I15, I6, I8, I10, I12, I13, I14, I16, I17, I18, I19, I20, I22, I23, I24, I27, I29, I30, I35, I37, I38, I39, I40, I41, I42, I43, I44, I49	용 도	허용용도	○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70%이하	
		용 적 률	○ 350%이하	
		높이(층)	-	
		배 치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	
		형 태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사용 ○ 옥상부분은 냉각탑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주 차	○ 시설면적 190㎡당 1대, 기계식주차장 불허 ○ 대형주차면(3.25m × 14.0m)을 전체 주차면의 5% 이상 확보하며, 최소 1개면 이상 확보할 것	
		색 채	주조색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주조색(권장)
			보조색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보조색(권장)
			강조색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강조색(권장)
		건축선	-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공장용지(I)	I 48	용 도	허용용도	○ 지식산업센터 1.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의 시설을 말함 2. 지식산업센터의 입주가능업종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표준산업분류;25)에 한한다. 3. 기타사항은 관련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등)을 따른다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 지식산업센터 내 불허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동물병원,단란주점,의약품도매점, 안마시술소・안마원 용도는 불허)
		건 폐 율	○ 70%이하	
		용 적 률	○ 350%이하	
		높이(층)	-	
		배 치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	
		형 태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사용	
		주 차	○ 공장용: 시설면적 190㎡당 1대, 기타용: 관련조례 준수 ○ 기계식 주차장 불허 ○ 확장형 주차단위구획(2.5m×5.1m) 20%이상 확보	
		색 채	주조색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중 공장용지의 주조색(권장)
			보조색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중 공장용지의 보조색(권장)
			강조색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중 공장용지의 강조색(권장)
		건 축 선	-	
공장용지(I)	I 21	용 도	허용용도	○ 지식산업센터 1.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의 시설을 말함 2. 지식산업센터의 입주가능업종은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받은 업종에 한함 3. 기타사항은 관련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등)을 따른다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 지식산업센터 내 불허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장의사,총포판매사,동물병원,단란주점,의약품도매점, 안마시술소・안마원 용도는 불허)
		건 폐 율	○ 70%이하	
		용 적 률	○ 350%이하	
		높이(층)	-	
		배 치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	
		형 태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사용	
		주 차	○ 공장용: 시설면적 190㎡당 1대, 기타용: 관련조례 준수 ○ 기계식 주차장 불허 ○ 확장형 주차단위구획(2.5m×5.1m) 20%이상 확보	
		색 채	주조색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중 공장용지의 주조색(권장)
			보조색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중 공장용지의 보조색(권장)
			강조색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중 공장용지의 강조색(권장)
		건 축 선	-	

▨ 단독주택용지 (변경 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단독주택용지(H)	H1 ~ H3	용 도	허용용도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포함) ○ 1층에 한하여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단,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4호 가목 및 나목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00% 이하	
		높이(층)	○ 3층 이하	
		형 태	○ 건축물 외부: 건축설비 노출 금지 ○ 담장: 1.5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주 차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며 기계식주차장 불허	
		색 채	주조색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중 단독주택용지의 주조색(권장)
			보조색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중 단독주택용지의 보조색(권장)
			강조색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중 단독주택용지의 강조색(권장)
		건 축 선	○ 소로1-1, 소로1-2, 소로3-1호선변 건축한계선 1m	

▨ 지원시설용지 (변경 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지원시설용지(S)	S2 - ①~⑱	용 도	허용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의료시설(장례식장 제외) ○ 종교시설(납골당 제외) ○ 판매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교육연구시설(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연구소에 한함) ○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층)	○ 7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 ○ 공동건축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	
		형 태	○ 저층부(1층)는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 사용 -투시형 벽면: 도로에 접한 벽면에 한하여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 -투시형 셔터: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하는 부분포함)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 사용 ○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옥상정원 등의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으로 권장 ○ 도로변 외벽으로 도시가스등 설비배관의 노출은 금하고 기존 건축물 또는 건축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	
		주 차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며 기계식주차장 불허	
		색 채	주조색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중 지원시설용지의 주조색(권장)
			보조색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중 지원시설용지의 보조색(권장)
			강조색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중 지원시설용지의 강조색(권장)
		건축선	○ 광로3-23, 대로 3-118, 중로1-140, 중로2-663, 중로2-665호선변 건축한계선 3m ○ 중로3-249호선변 건축한계선 2m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지원시설용지(S)	S2a - ①~⑧, S2b - ①~⑧	용 도	허용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의료시설(장례식장 제외) ○ 종교시설(납골당 제외) ○ 판매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교육연구시설(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연구소에 한함) ○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층)	○ 7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 ○ 공동건축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	
		형 태	○ 저층부(1층)는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 사용 -투시형 벽면: 도로에 접한 벽면에 한하여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 -투시형 셔터: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하는 부분포함)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 사용 ○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옥상정원 등의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으로 권장 ○ 도로변 외벽으로 도시가스등 설비배관의 노출은 금하고 기존 건축물 또는 건축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	
		주 차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며 기계식주차장 불허	
		색 채	주조색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주조색(권장)
			보조색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보조색(권장)
			강조색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강조색(권장)
		건축선	○ 중로2-665, 중로3-249호선변 건축한계선 3m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지원시설용지(S)	S3 - ①, ②	용 도	허용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에 한함)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연구소에 한함)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층)	○7층 이하	
		배 치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 ○공동건축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	
		형 태	○저층부(1층)는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 사용 -투시형 벽면: 도로에 접한 벽면에 한하여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 -투시형 셔터: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하는 부분포함)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 사용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옥상정원등의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으로 권장 ○도로변 외벽으로 도시가스등 설비배관의 노출은 금하고 기존 건축물 또는 건축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	
		주 차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며 기계식주차장 불허	
		색 채	주조색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주조색(권장)
			보조색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보조색(권장)
			강조색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강조색(권장)
		건축선	○광로3-23, 중로2-666호선변 건축한계선 3m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지원시설용지(S)	S3a - ①~⑨	용 도	허용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에 한함)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연구소에 한함)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층)	○7층 이하	
		배 치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 ○공동건축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	
		형 태	○저층부(1층)는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 사용 -투시형 벽면: 도로에 접한 벽면에 한하여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 -투시형 셔터: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하는 부분포함)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 사용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옥상정원등의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으로 권장 ○도로변 외벽으로 도시가스등 설비배관의 노출은 금하고 기존 건축물 또는 건축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	
		주 차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며 기계식주차장 불허	
		색 채	주조색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주조색(권장)
			보조색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보조색(권장)
			강조색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강조색(권장)
		건축선	○광로3-23, 중로1-364, 중로2-666호선변 건축한계선 3m ○중로3-337호선변 건축한계선 2m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지원시설용지(S)	S3b - ①~⑩	용 도	허용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에 한함)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연구소에 한함)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층)	○7층 이하	
		배 치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 ○공동건축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	
		형 태	○저층부(1층)는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 사용 -투시형 벽면: 도로에 접한 벽면에 한하여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 -투시형 셔터: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하는 부분포함)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 사용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옥상정원 등의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으로 권장 ○도로변 외벽으로 도시가스등 설비배관의 노출은 금하고 기존 건축물 또는 건축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	
		주 차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며 기계식주차장 불허	
		색 채	주조색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주조색(권장)
			보조색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보조색(권장)
			강조색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강조색(권장)
		건축선	○중로2-666호선, 중로3-나호선변 건축한계선 3m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지원시설용지(S)	S5 ①, ②	용 도	허용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에 한함) ○ 판매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교육연구시설(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연구소에 한함) ○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층)	○ 7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 ○ 공동건축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	
		형 태	○ 저층부(1층)는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 사용 -투시형 벽면: 도로에 접한 벽면에 한하여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 -투시형 셔터: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하는 부분포함)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 사용 ○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옥상정원 등의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으로 권장 ○ 도로변 외벽으로 도시가스등 설비배관의 노출은 금하고 기존 건축물 또는 건축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	
		주 차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며 기계식주차장 불허	
		색 채	주조색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주조색(권장)
			보조색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보조색(권장)
			강조색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강조색(권장)
		건축선	○ 대로3-117, 중로2-671, 중로2-672호선변 건축한계선 5m	

▨ 재활용시설용지 (변경 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재활용시설용지(RE)	RE ①	용 도	허용용도	○ 재활용산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이(층)	-	
		주 차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며 기계식주차장 불허	

▨ 주유소용지 (변경 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주유소용지(S)	01 - ①	용 도	허용용도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부대시설 포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부대시설 포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층)	○ 5층 이하	
		배 치	○ 각 시설별 관계법규에 따른 배치기준을 준수	
		색 채	○ 정유업체 고유 색채 적용 가능 ○ 정유업체 고유 색채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의 색채기준 준수	
			주조색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중 지원시설용지의 주조색(권장)
			보조색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중 지원시설용지의 보조색(권장)
			강조색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중 지원시설용지의 강조색(권장)
		건축선	○ 광로3-23, 중로1-364호선변 5m	

▨ 주차장 (변경 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주차장(P)	P1 ~ P8 ①	용 도	허용용도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포함) ○근린생활시설 도입시 비율은 연면적의 30%이내 [근린생활시설 허용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 제외), 판매시설(상점 및 이와 유사한 것에 한함), 운동시설(운동장,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90% 이하	
		용적률	○900% 이하	
		높이(층)	-	
		형태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시 지상부에 일부 주차장 설치 ○주차구획은 교통영향평가 협의결과를 반영할 것 단, 불가피한 경우는 관리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변경가능	

▨ 공영차고지 (변경)

▷ 기 정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공영차고지(PP)	PP - ①	용 도	허용용도	○자동차관련시설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및 주차장에 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이(층)	-	

▷ 변 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공영차고지(PP)	PP - ①	용 도	허용용도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및 같은 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른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에 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이(층)	-	

▨ 공공문화·복지시설 (변경 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공공문화·복지시설(CW)	CW 1 - ①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업무수행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사회복지시설 - 제13호 운동시설 중 탁구장, 체육도장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기타	-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층)	○5층 이하	
		배 치	○각 시설별 관계법규에 따른 배치기준을 준수	
		형 태	○외벽의 재료, 형태 등 - 건축물의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 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옥상녹화 및 옥상휴게공간 설치 권장 ○장애인을 위한 계획 - 사회복지시설용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을 수립하되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해당 주차장 관련조례 규정을 적용한다.	
		색 채	주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주조색(권장)
			보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보조색(권장)
			강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강조색(권장)
		건축선	• 광로3-23호선, 대로3-118호선변 3m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없음)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교통처리계획	○ 인천광역시 지방교통영향심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검단 일반산업단지 교통영향평가 내용에 따름 ○ 주차장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며 확장형 주차단위구획(2.5m×5.1m) 20%이상 확보할 것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 옥외광고물에 관한 기준 제시(권장) - “첨부2.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참조	
경관에 관한 사항	○ 대형 건축물에 의한 대형입면은 시각적 분절 등의 방법으로 위압감을 감소시키고 미관을 향상시킬 것 ○ 차가운 이미지의 공장시설은 가급적 녹지를 통하여 차폐	권장 사항
기 타	○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을 준용함 (관련법이 변경 시 강화된 규정을 따른다)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사항

가. 서구 오류동 1620-1번지 일원에 위치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의제)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20-7번지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 공영차고지)
- 명 칭 : 뷰티풀파크 버스공영차고지 내 수소충전소 조성사업(2단계)

○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 적 : 2,013.0㎡ (전체 9,998.7㎡ 중 2단계 2,013.0㎡)
- 규 모 : 수소충전소, 설비동, 사무동 등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 에스케이플러그하이버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황균(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20층(청진동, 그랑서울))

○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일 ~ 2026.12.3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	비고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1	서 구 오류동	1620-7	주차장	2,013.0	2,013.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	2단계
합 계				2,013.0	2,013.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관계도서의 열람

(관계도서는 다음 열람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여드림)

○ 관련 도서: 『별첨』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 열람 장소: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계획과 (전화 032-560-6872)

1

2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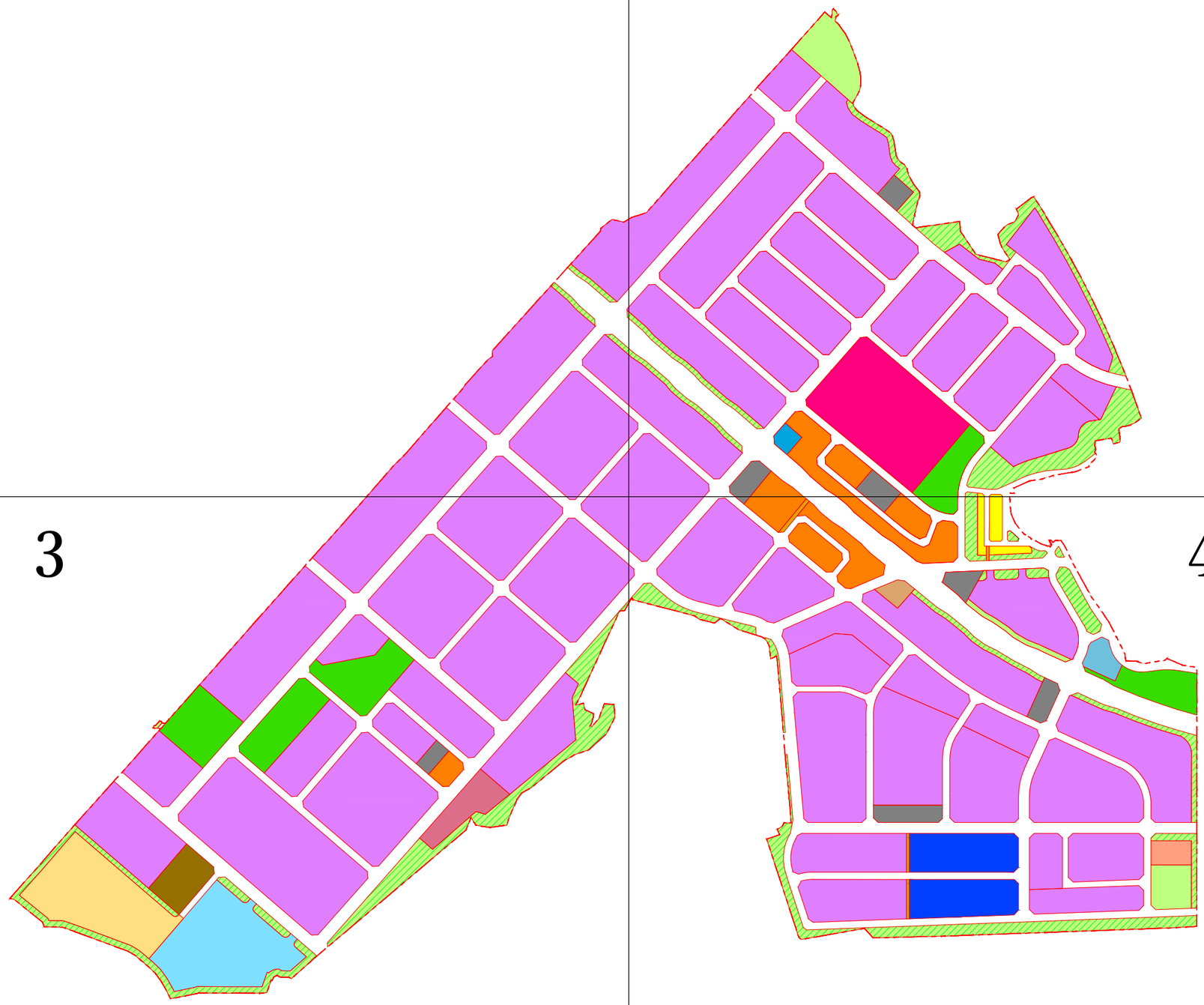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 일반공장용지 (I)
- 임대공장용지 (I)
- 지식산업센터용지 (I)
- 재활용시설용지 (RE)
- 지 원 시 설 (S)
- 주 유 소 용 지 (O)
- 주 거 용 지 (H)
- 저 류 시 설 (WR)
- 공공문화·복지시설 (CW)
- 폐기물처리시설 (W)
- 폐수종말처리장 (WDP)
- 빗물펌프장(WR)
- 변 전 소 (TS)
- 주 차 장 (P)
- 공 영 차 고 지 (PP)

구 분	작 성 자	입 안 권 자		결 정 권 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 속	(주)해연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직 위	대표이사	–	지구단위계획 팀 장	–	지구단위계획 팀 장
직 명	–	지방시설주사보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주사보	지방시설주사
성 명	조 성 해	김 민 성	고 병 화	김 민 성	고 병 화
확인인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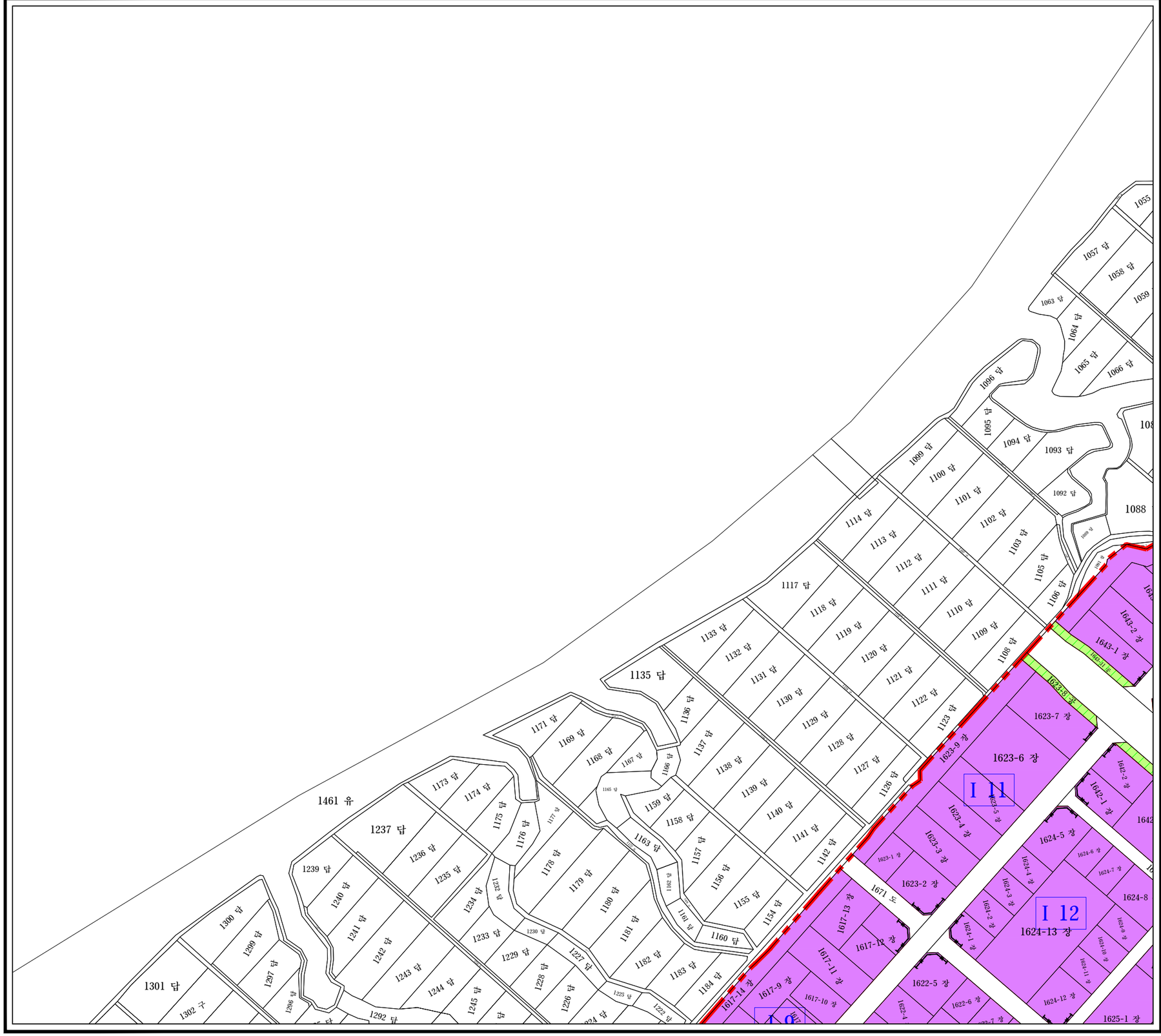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 일반공장용지 (I)
- 임대공장용지 (I)
- 지식산업센터용지 (I)
- 재활용시설용지 (RE)
- 지 원 시 설 (S)
- 주 유 소 용 지 (O)
- 주 거 용 지 (H)
- 저 류 시 설 (WR)
  ※ 저류시설(WR3)은 공원 내 포함시설.
- 공공문화·복지시설 (CW)
- 폐기물처리시설 (W)
- 폐수종말처리장 (WDP)
- 빗물펌프장(WR)
- 변 전 소 (TS)
- 주 차 장 (P)
- 공 영 차 고 지 (PP)
- 가 구 번 호
- 획 지 위 치
- 획 지 경 계 선
- 차량진출입불허구간

구 분	작 성 자	입 안 권 자		결 정 권 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 속	(주)해연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직 위	대표이사	–	지구단위계획 팀 장	–	지구단위계획 팀 장
직 명	–	지방시설주사보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주사보	지방시설주사
성 명	조 성 해	김 민 성	고 병 화	김 민 성	고 병 화
확인인					

KEY -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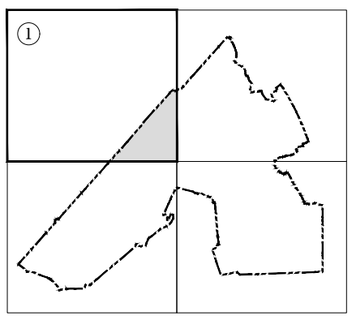

N

0 50 100 200 30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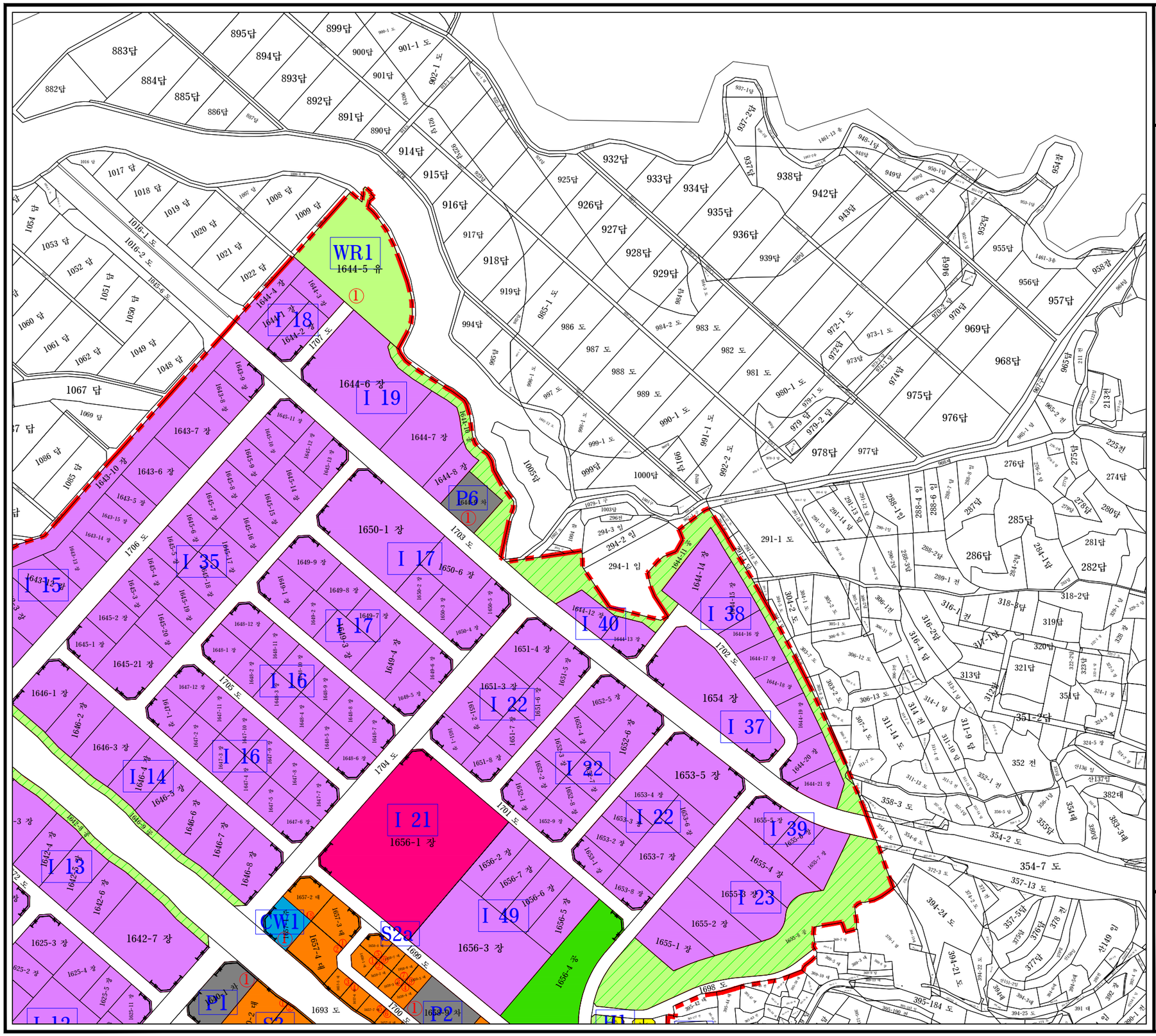
WR1
1644-5 유
I 18
I 19
I 35
I 15
I 17
I 16
I 14
I 13
I 40
I 38
I 37
I 22
I 21
I 49
I 23
I 39
P6
P1
P2
CW1
S2a
1644-6 장
1644-7 장
1644-8 장
1650-1 장
1650-6 장
1649-4 장
1654 장
1656-1 장
1656-3 장
1653-5 장
1642-7 장
1625-3 장
1645-21 장
1646-1 장
1646-2 장
1646-3 장
1643-7 장
1643-10 장
1643-6 장
1706 도
1704 도
1703 도
1702 도
1701 도
1705 도
1707 도
1693 도
1698 도
1700 도
1016-1 도
1016-2 도
1016-3 도
1005 답
1067 답
1086 답
1085 답
1054 답
1053 답
1052 답
1051 답
1050 답
1049 답
1048 답
1060 답
1061 답
1062 답
1017 답
1018 답
1019 답
1020 답
1021 답
1022 답
1008 답
1009 답
883답
884답
885답
886답
882답
895답
894답
893답
892답
891답
890답
899답
900답
901답
901-1 도
902-1 도
914답
915답
916답
917답
918답
919답
994답
985 답
985-1 도
986 도
987 도
988 도
989 도
990-1 도
991-1 도
992-2 도
999-1 도
999답
1000답
996답
1003답
296전
294-3 임
294-2 임
294-1 임
925답
926답
927답
928답
929답
932답
933답
934답
935답
936답
937답
937-1답
937-2답
938답
939답
942답
943답
948-1답
949답
950-1답
950-4 답
954답
952답
955답
956답
957답
958장
953-1답
1461-3유
1461-13 유
969답
968답
965답
965-2 전
213전
225전
970답
972답
972-1 도
973-1 도
974답
975답
976답
977답
978답
979 답
979-1 도
979-2 답
980-1 도
981 도
982 도
983 도
984-2 도
984답
1644-14 장
1644-15 장
1644-16 장
1644-17 장
1644-18 장
1644-19 장
1644-20 장
1644-21 장
1644-13 장
1644-12 장
1644-11 장
1644-10 장
1644-9 장
1644-4 장
1644-3 장
1644-2
1644-1 장
1644-12 유
1644-11 유
1644-10 유
1644-9 유
1644-8 유
1644-7 유
1644-6 유
1644-5 유
1644-4 유
1644-3 유
1644-2 유
1644-1 유
1644-13 유
1644-14 유
1644-15 유
1644-16 유
1644-17 유
1644-18 유
1644-19 유
1644-20 유
1644-21 유
1644-22 유
1644-23 유
1644-24 유
1644-25 유
1644-26 유
1644-27 유
1644-28 유
1644-29 유
1644-30 유
1644-31 유
1644-32 유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 일반공장용지 (I)
- 임대공장용지 (I)
- 지식산업센터용지 (I)
- 재활용시설용지 (RE)
- 지 원 시 설 (S)
- 주 유 소 용 지 (O)
- 주 거 용 지 (H)
- 저 류 시 설 (WR)
  ※ 저류시설(WR3)은 공원 내 포함시설.
- 공공문화·복지시설 (CW)
- 폐기물처리시설 (W)
- 폐수종말처리장 (WDP)
- 빗물펌프장(WR)
- 변 전 소 (TS)
- 주 차 장 (P)
- 공 영 차 고 지 (PP)
- H1 가 구 번 호
- ① 획 지 위 치
- 획 지 경 계 선
- 차량진출입불허구간

구 분	작 성 자	입 안 권 자		결 정 권 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 속	(주)해연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직 위	대표이사	–	지구단위계획 팀 장	–	지구단위계획 팀 장
직 명	–	지방시설주사보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주사보	지방시설주사
성 명	조 성 해	김 민 성	고 병 화	김 민 성	고 병 화
확인인					

KEY -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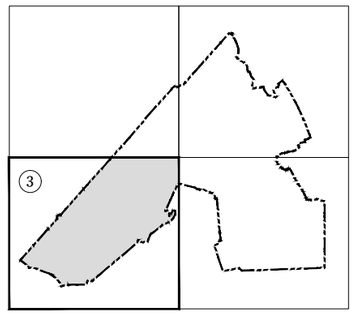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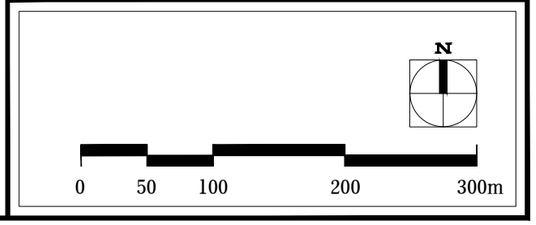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 일반공장용지 (I)
- 임대공장용지 (I)
- 지식산업센터용지 (I)
- 재활용시설용지 (RE)
- 지 원 시 설 (S)
- 주 유 소 용 지 (O)
- 주 거 용 지 (H)
- 저 류 시 설 (WR)
  ※ 저류시설(WR3)은 공원 내 포함시설.
- 공공문화·복지시설 (CW)
- 폐기물처리시설 (W)
- 폐수종말처리장 (WDP)
- 빗물펌프장(WR)
- 변 전 소 (TS)
- 주 차 장 (P)
- 공 영 차 고 지 (PP)
- H1 가 구 번 호
- ① 획 지 위 치
- 획 지 경 계 선
- 차량진출입불허구간

구 분	작 성 자	입 안 권 자		결 정 권 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 속	(주)해연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직 위	대표이사	–	지구단위계획 팀 장	–	지구단위계획 팀 장
직 명	–	지방시설주사보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주사보	지방시설주사
성 명	조 성 해	김 민 성	고 병 화	김 민 성	고 병 화
확인인					

KEY -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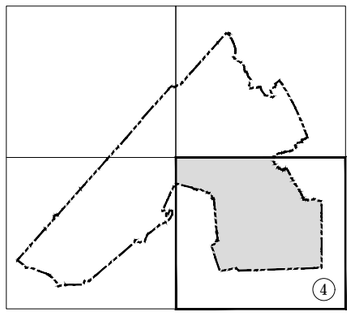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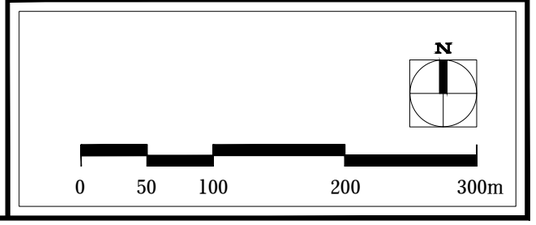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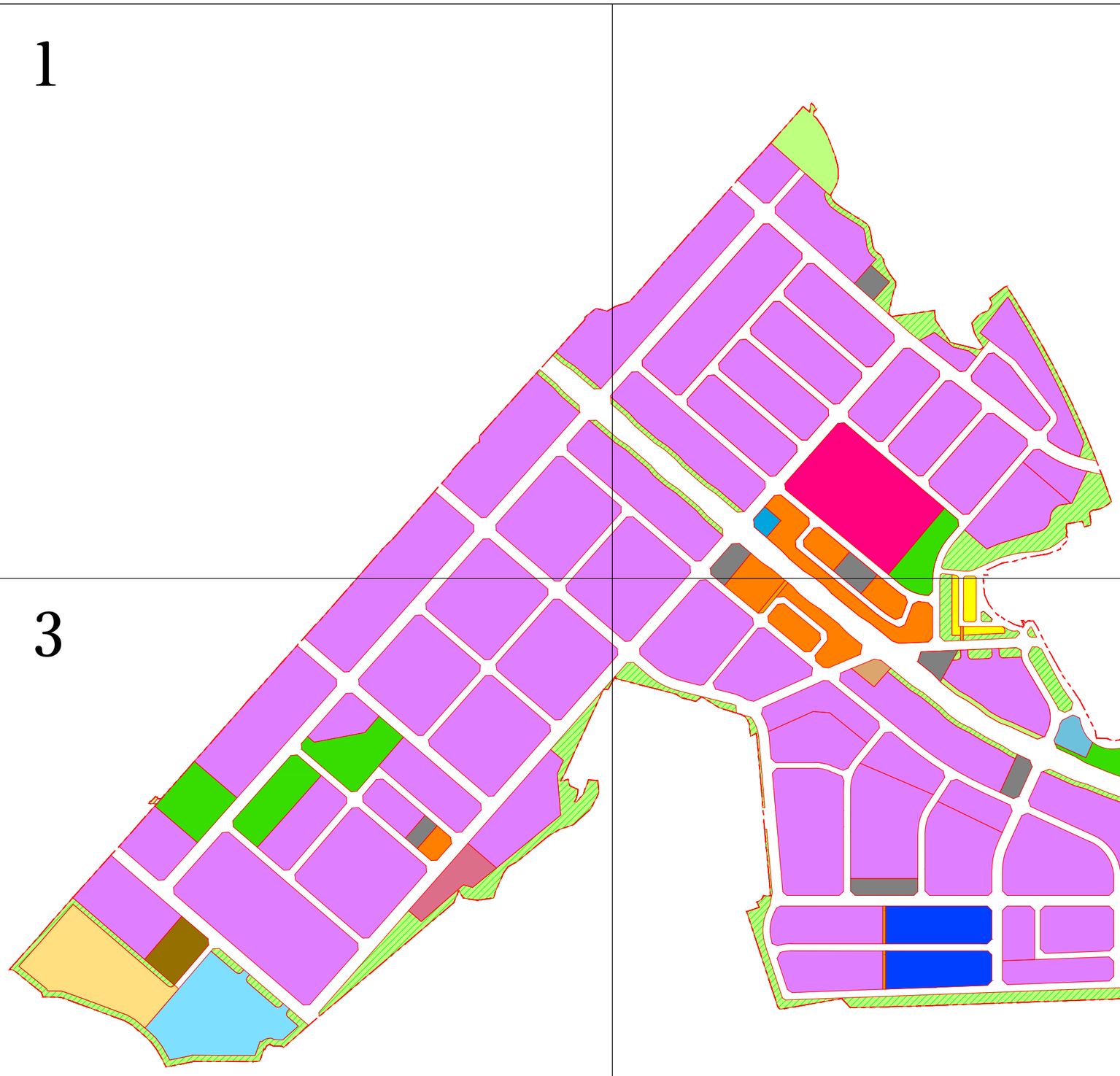

뷰티풀파크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 일반공장용지 (I)
- 임대공장용지 (I)
- 지식산업센터용지 (I)
- 재활용시설용지 (RE)
- 지 원 시 설 (S)
- 주 유 소 용 지 (O)
- 주 거 용 지 (H)
- 저 류 시 설 (WR)
- 공공문화·복지시설 (CW)
- 폐기물처리시설 (W)
- 폐수종말처리장 (WDP)
- 빗물펌프장(WR)
- 변 전 소 (TS)
- 주 차 장 (P)
- 공 영 차 고 지 (PP)

구 분	작 성 자	입 안 권 자		결 정 권 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 속	(주)해연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직 위	대표이사	–	지구단위계획 팀 장	–	지구단위계획 팀 장
직 명	–	지방시설주사보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주사보	지방시설주사
성 명	조 성 해	김 민 성	고 병 화	김 민 성	고 병 화
확인인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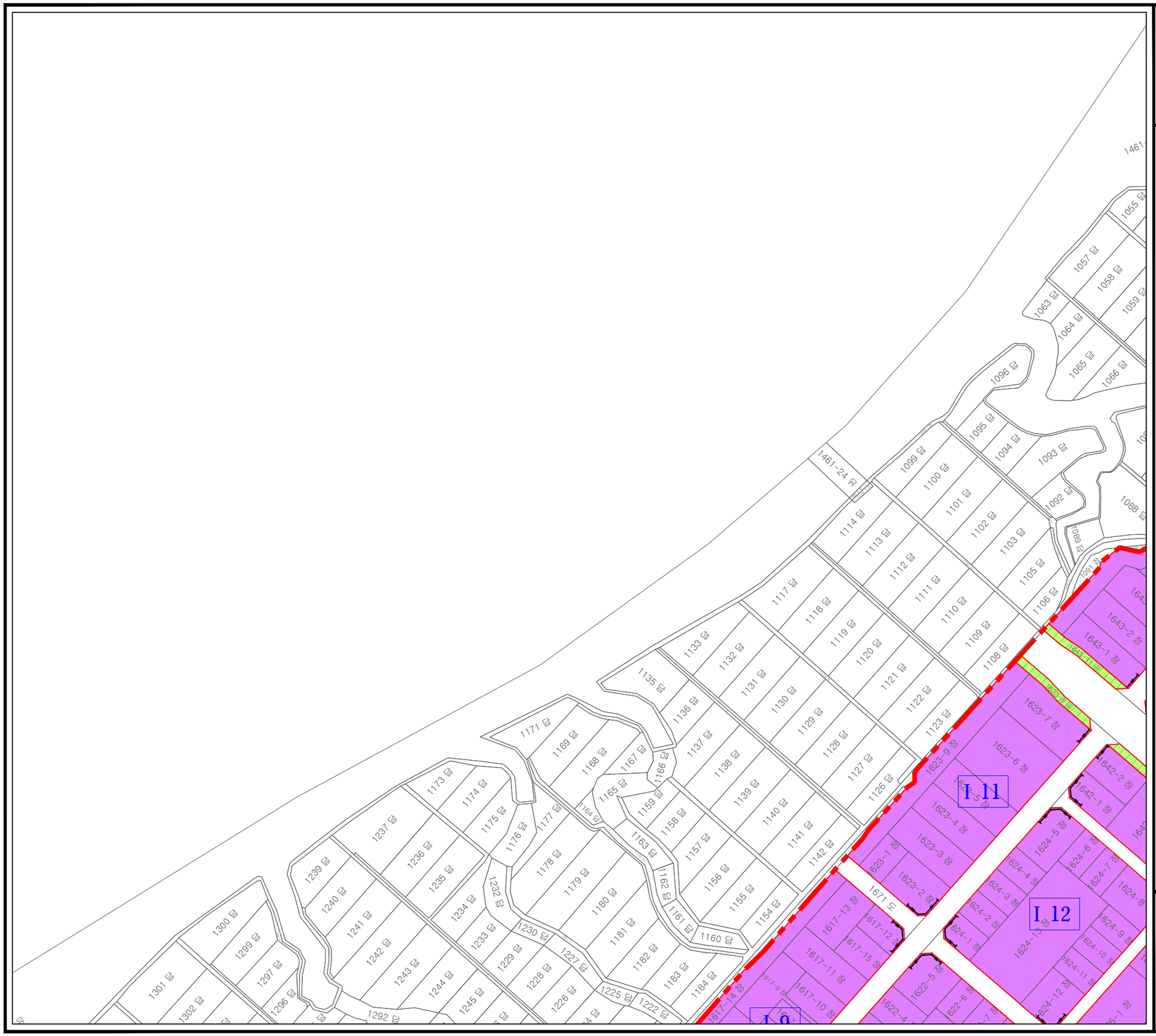

뷰티풀파크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 일반공장용지 (I)
- 임대공장용지 (I)
- 지식산업센터용지 (I)
- 재활용시설용지 (RE)
- 지 원 시 설 (S)
- 주 유 소 용 지 (O)
- 주 거 용 지 (H)
- 저 류 시 설 (WR)
  ※ 저류시설(WR3)은 공원 내 포함시설.
- 공공문화·복지시설 (CW)
- 폐기물처리시설 (W)
- 폐수종말처리장 (WDP)
- 빗물펌프장(WR)
- 변 전 소 (TS)
- 주 차 장 (P)
- 공 영 차 고 지 (PP)
- 가 구 번 호
- 획 지 위 치
- 획 지 경 계 선
- 차량진출입불허구간

구 분	작 성 자	입 안 권 자		결 정 권 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 속	(주)해연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직 위	대표이사	–	지구단위계획 팀 장	–	지구단위계획 팀 장
직 명	–	지방시설주사보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주사보	지방시설주사
성 명	조 성 해	김 민 성	고 병 화	김 민 성	고 병 화
확인인					

KEY -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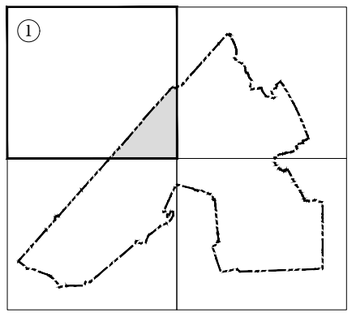

N

0 50 100 200 300m

뷰티풀파크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 일반공장용지 (I)
- 임대공장용지 (I)
- 지식산업센터용지 (I)
- 재활용시설용지 (RE)
- 지 원 시 설 (S)
- 주 유 소 용 지 (O)
- 주 거 용 지 (H)
- 저 류 시 설 (WR)
  ※ 저류시설(WR3)은 공원 내 포함시설.
- 공공문화·복지시설 (CW)
- 폐기물처리시설 (W)
- 폐수종말처리장 (WDP)
- 빗물펌프장(WR)
- 변 전 소 (TS)
- 주 차 장 (P)
- 공 영 차 고 지 (PP)
- H1 가 구 번 호
- ① 획 지 위 치
- 획 지 경 계 선
- 차량진출입불허구간

구 분	작 성 자	입 안 권 자		결 정 권 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 속	(주)해연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직 위	대표이사	–	지구단위계획 팀 장	–	지구단위계획 팀 장
직 명	–	지방시설주사보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주사보	지방시설주사
성 명	조 성 해	김 민 성	고 병 화	김 민 성	고 병 화
확인인					

KEY -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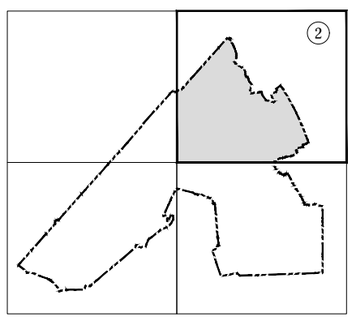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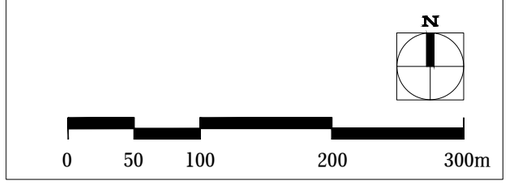

뷰티풀파크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 일반공장용지 (I)
- 임대공장용지 (I)
- 지식산업센터용지 (I)
- 재활용시설용지 (RE)
- 지 원 시 설 (S)
- 주 유 소 용 지 (O)
- 주 거 용 지 (H)
- 저 류 시 설 (WR)
  ※ 저류시설(WR3)은 공원 내 포함시설.
- 공공문화·복지시설 (CW)
- 폐기물처리시설 (W)
- 폐수종말처리장 (WDP)
- 빗물펌프장(WR)
- 변 전 소 (TS)
- 주 차 장 (P)
- 공 영 차 고 지 (PP)
- 가 구 번 호
- 획 지 위 치
- 획 지 경 계 선
- 차량진출입불허구간

구 분	작 성 자	입 안 권 자		결 정 권 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 속	(주)해연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직 위	대표이사	–	지구단위계획 팀 장	–	지구단위계획 팀 장
직 명	–	지방시설주사보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주사보	지방시설주사
성 명	조 성 해	김 민 성	고 병 화	김 민 성	고 병 화
확인인					

KEY -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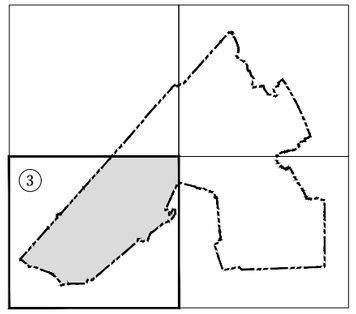

N

0 50 100 200 300m

뷰티풀파크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 일반공장용지 (I)
- 임대공장용지 (I)
- 지식산업센터용지 (I)
- 재활용시설용지 (RE)
- 지 원 시 설 (S)
- 주 유 소 용 지 (O)
- 주 거 용 지 (H)
- 저 류 시 설 (WR)
  ※ 저류시설(WR3)은 공원 내 포함시설.
- 공공문화·복지시설 (CW)
- 폐기물처리시설 (W)
- 폐수종말처리장 (WDP)
- 빗물펌프장(WR)
- 변 전 소 (TS)
- 주 차 장 (P)
- 공 영 차 고 지 (PP)
- H1 가 구 번 호
- ① 획 지 위 치
- 획 지 경 계 선
- 차량진출입불허구간

구 분	작 성 자	입 안 권 자		결 정 권 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 속	(주)해연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직 위	대표이사	–	지구단위계획 팀 장	–	지구단위계획 팀 장
직 명	–	지방시설주사보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주사보	지방시설주사
성 명	조 성 해	김 민 성	고 병 화	김 민 성	고 병 화
확인인					

KEY -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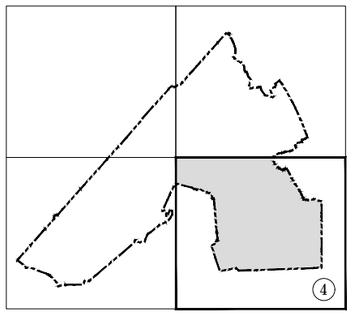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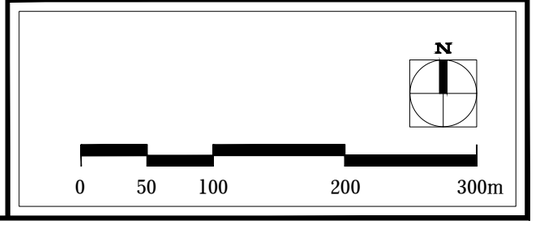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4-108호

석남동 444-4번지 황해아파트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행위제한 고시

우리 구 석남동 444-4번지 일원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9항 및 제23조의3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와 행위제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 6. 3.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황해아파트 소규모재개발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44-4번지

나. 구역면적 : 4,316.3㎡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가. 착수 예정일 : 2026. 03.

나. 준공 예정일 : 2028. 05.

※ 사업추진단계시 착수일 및 준공일은 변경될 수 있음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가. 조 합 의　명 칭 : 황해아파트 소규모재개발사업

나. 사무소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44번지 가동 5,6라인 지하사무소

5. 조합설립인가일 : 2024. 5. 29.

6.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가. 행위제한 구역: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과 동일

나. 행위제한 대상

○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가설건축물의 건축

○ 이동이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다. 조합설립인가 고시가 있는 다음 날부터 행위제한 대상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제23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라. 지형도면: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s://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함.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4-110호

공원마을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2-39(2022. 3. 18.)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우리 구 석남동 588-8번지 일원 공원마을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사업시행계획인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6. 3.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공원마을 소규모재건축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88-8번지 외 2필지

나. 면 적 : 3,033.3㎡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공원마을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윤재희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로 61(석남동)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2019. 9. 1. ~ 2027. 2. 28. (91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2. 3. 21.

6.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대지면적(㎡)	3,033.3	**건축면적(㎡)**	1,080.8217
건축연면적(㎡)	10,169.5672	**건폐율(%)**	35.63
용적률(%)	249.96	**건축물의 높이(m)**	55.8
건축물 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규모**	**지하1층, 지상19층**

7.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 공동주택(아파트) 1개동 91세대(지상2층~지상19층)

8. 변경의 사유 및 내용

가. 변경사유 : 사업시행자 요청

나. 주요 변경내용

1)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9. 9. 1. ~ 2023. 9. 1. (48개월)

변경 2019. 9. 1. ~ 2027. 2. 28. (91개월)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4-112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6. 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로 108 외 1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4. 6. 3.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4-6-3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55-9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로 108 (백석동)	20090922	옛 자연부락의 명칭을 사용하여 한들로라 명명	
2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112-18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로 66-1 (백석동)	20090922	옛 자연부락의 명칭을 사용하여 한들로라 명명	
3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112-19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로 66-2 (백석동)	20090922	옛 자연부락의 명칭을 사용하여 한들로라 명명	
4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2-31, 212-41, 212-132, 212-133, 2	인천광역시 서구 거월로 9-15 (백석동)	20220221	인근의 자연부락인 거월을 지나는 도로임	
5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0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로 9 (백석동)	20090922	옛 자연부락의 명칭을 사용하여 한들로라 명명	한들 중계펌프장
6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0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로 74 (백석동)	20090922	옛 자연부락의 명칭을 사용하여 한들로라 명명	한들타워1
7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29-4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95번안길 31 (당하동)	20081231	고산후로95번의 안쪽으로 분기된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731-1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15번길 17-1 (오류동)	20090922	봉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21-3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835번길 7 (원당동)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3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1-77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32번안길 12 (원창동)	20131202	북항로32번길에서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고시일 : 2024-6-3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097 (백석동)	건물 말소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었음	
2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190 (오류동)	기본도 현행화(시 토지정보과-7280(24.5.9.))	20090710	검데이'가 검단으로 변천한 것으로 옛 지명 부여 및 검단신도시 중심을 가로 지르는 도로	세기자원
3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657 (금곡동)	기본도 현행화(시 토지정보과-7280(24.5.9.))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었음	
4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206번길 4-15 (오류동)	기본도 현행화(시 토지정보과-7280(24.5.9.))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승보건설
5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206번길 4-16 (오류동)	기본도 현행화(시 토지정보과-7280(24.5.9.))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바이환경
6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206번길 4-8 (오류동)	기본도 현행화(시 토지정보과-7280(24.5.9.))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4 - 1147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6. 3.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개정이유

○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연령 조정, 시험 시행을 위한 변경사항 및 근무성적평정에 반영되는 가산점 등의 위임사항 신설 등 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 응시수수료 반환기간 요건 확대(안 제12조제2항)

나. 응시수수료 면제 확대(안 제12조제3항)

다.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안 제14조)

라.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도 시험위원 위촉 제한 추가(안 제18조제4항)

마. 인사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채시험 점검 의무화 신설(안 제23조의2)

바.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응시자격증의 전산란을 삭제하고, 해양수산·항공·시설 및 조리 직렬 시험에 응시자격증 추가(안 별표 4)

사. 자격증 소지자 경력경쟁임용 자율성 확대(안 별표5 비고 1, 별표6 제2호 비고 5)

아.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전산 직렬에 기능사 및 빅데이터분석기사 자격증 추가(안 별표 6)

자.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에 전산 직렬을 신설하고,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가산대상 자격증에 시설관리(기계시설·전기시설·화공시설) 및「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증 추가(안 별표 11)

차. 전산·공업(일반기계)·시설관리(기계시설·전기시설·화공시설)·기계운영 및 공업연구 직렬에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가산점 대상 중 미반영된 자격증 추가(안 별표 19)

카.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확인서 가산점 규정 폐지(안 제34조)

타. 시·군·구 교류에 임용된 5급이하 공무원, 전문직위 공무원,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의 근무경력 가산점 기준 신설(안 제34조의2, 안 별표 21)

파. 실적가산점 부여 범위 정비(안 제34조의3)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담당부서 : 총무과, 전화 560-4102, 팩스 560-27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2024.1.1. 시행)에 따라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을 조정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2023. 6. 13. 시행)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을 위한 변경사항과 근무성적평정에 반영되는 가산점 등의 위임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산대상 자격증을 신설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응시수수료 반환기간 요건 확대(안 제12조제2항)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응시수수료 반환기간을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신설함.

나. 응시수수료 면제 확대(안 제12조제3항)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까지 확대하여 장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및 생활 안정 등을 도모함.

다.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안 제14조)

라.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도 시험위원 위촉 제한 추가(안 제18조제4항)

채용 절차의 공정성 확대를 위해 위촉 제한을 추가함.

마. 인사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채시험 점검 의무화 신설(안 제23조의2)

시험실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경력경쟁임용시험 과정의 적절성을 점검하도록 함.

바.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응시자격증의 전산란을 삭제하고, 해양수산·항공·시설 및 조리 직렬 시험에 응시자격증 추가(안 별표 4)

사. 자격증 소지자 경력경쟁임용 자율성 확대(안 별표5 비고 1, 별표6 제2호 비고 5)

자격증 소지자 대상 경력경쟁채용시험 시 별표5, 별표6 제2호에서 정한 자격증별 임용직급과 필요경력을 준수하야 하는데, 이를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 인사 운영에 유연성을 부여함.

아.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전산 직렬에 기능사 및 빅데이터분석기사 자격증 추가(안 별표 6)

자.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에 전산 직렬을 신설하고,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가산대상 자격증에 시설관리(기계시설·전기시설·화공시설) 및「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증 추가(안 별표 11)

차. 전산·공업(일반기계)·시설관리(기계시설·전기시설·화공시설)·기계운영 및 공업연구 직렬에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가산점 대상 중 미반영된 자격증 추가(안 별표 19)

카.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확인서 가산점 규정 폐지(안 제34조)

타. 시·군·구 교류에 임용된 5급이하 공무원, 전문직위 공무원,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의 근무경력 가산점 기준 신설(안 제34조의2, 안 별표 21)

파. 실적가산점 부여 범위 정비(안 제34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제12조제3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부가족 중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를 **“18세 이상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4항 중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위원을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고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으로”**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임용점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④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점검 대상이 발생하면 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하며, 점검의 결과가 제출된 때에 임용점검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⑦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⑧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 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제34조제1항 중 “별표 19와 같고, 언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가산점은 별표 20과 같다”를 **“별표 19와 같다”**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의2(근무경력의 가산점)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가산점 부여 요건 및 가산점은 별표 21과 같다. 이 경우 가산점 평정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항에 따른다.**

제34조의3제1항 중 “3점”을 **“2.4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11, 별표 19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0을 삭제한다.

별표 2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제34조의2, 제34조의3, 별표 11, 별표 19, 별표 20, 별표 21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제34조의2, 제34조의3, 별표 11, 별표 19, 별표 20, 별표 2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정기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제24조제1항 관련)

직렬 \ 계급 /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직렬 \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위 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조 리	조 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고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4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5]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 (제23조제1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	기사(3년), 산업기사(6년)	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4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2년)	산업기사, 기능사 (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2년)

2. 삭제

비 고

1.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제외한다.

1의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 경력경쟁임용 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 : 10년이상, 3급 : 8년이상, 4급 : 4년이상

2.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3.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6.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별표 6]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제23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산	전 산 데이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능 사 :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공 업	일반기계 농업기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조 선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기 능 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기 능 사 :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기기 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기 능 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원 자 력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금 속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 능 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 능 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 능 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기 능 사 :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 능 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식물검역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임업종묘,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 능 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녹 지	조 경	기 술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기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산림, 조경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 능 사 :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 능 사 : 산림, 임산가공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술 사 : 해양,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산업기사 :
	일반선박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박항해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 : 조선, 항로표지
	선박기관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해양교통시설	기 술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장 : 전기, 전자기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기 능 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 능 사 : 식품가공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 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수 질	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대 기	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폐 기 물	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항 공	일반항공	기 술 사 :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 사 : 항공
	정 비	산업기사 : 항공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일반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수도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기 사 :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 산업기사 : 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 기 능 사 : 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 업 기 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 기 능 사 : 방설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지 적 측 지	기 술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 업 기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 업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디 자 인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 업 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 능 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 업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송통신	통 신 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 업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 능 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조리	조 리	기 능 장 : 조리 산 업 기 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기 능 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위생	사 역	기 능 사 : 환경기능사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 업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 기 능 사 : 계분야), 조경 전기, 기계정비, 조경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기계시설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 업 기 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승강기
	전기시설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 업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 능 사 : 전기, 승강기
	화공시설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 업 기 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 능 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 계급 /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행 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법무행정					
	재 경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감 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 무	지 방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호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 츠제작전문가
	데 이 터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공 업	일반전기			무대조명전문인1급	무대조명전문인2급	무대조명전문인3급
	일반기계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원 자 력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원자로조종 감독자,원자로조 종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직렬 \ 계급 /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농 업	축 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수 의	수 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질병관리사(7) 수의사(7)	수산질병관리사(3) 수의사(3)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일반선박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양수산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보건교육사3급
	방 역	의사(2) 한의사(2) 수의사(7) 약사(7) 간호사(12)	수의사(3) 약사(3) 간호사(6)	수의사 약사 간호사(3)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기공사(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보건의료정보관리사(12) 안경사(12)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 임상심리사1급(7)	임상병리사(8) 보건의료정보관리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보건의료정보관리사(8) 안경사(8)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심리사1급(3)	임상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안경사(5)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3)	임상병리사(2) 보건의료정보관리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보건의료정보관리사(2) 안경사(2) 임상심리사2급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2) 한의사(2)				
	치 무	치과의사(2)				
약 무	약 무	약사(7) 한약사(7)	약사(3) 한약사(3)	약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직렬 \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환경	일반환경	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7)	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3)	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위생사(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수질					
	대기					
	폐기물					
항공	일반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	자가용조종사(3) 항공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 정비사(3) 운항관리사(3)	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조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3)	자가용조종사	
	정비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설	건축	건축사(5)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	건축사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디자인	건축사(5)	건축사			
속기	속기			한글속기 1·2급(5)	한글속기 1·2·3급(2)	한글속기 1·2·3급
위생	위생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5)	영양사(2)	영양사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고 1. (삭제)

2.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3.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6 운전직류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에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11]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제22조 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전 산	전 산 데이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능 사 :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공 업	일반기계 농업기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 업	기계운전	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조 선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기 능 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기기 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기 능 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원 자 력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기 능 사 :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 업	섬 유	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 능 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 능 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기 능 사 :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 능 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농산물품질관리사
	식물검역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녹 지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나무의사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 능 사 : 산림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나무의사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 능 사 : 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 술 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 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기 능 사 : 조경, 산림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나무의사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술 사 : 해양,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기 능 사 :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수산물품질관리사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교통시설	기 술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장 : 전기, 전자기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기 능 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 능 사 : 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보건교육사3급
보 건	방 역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간호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2급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영양사, 위생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방사선관리 기 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기사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대기·수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수 질	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3급
	대 기	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대기)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폐 기 물	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일반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수도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측 지	기 술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시 설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디 자 인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건축,실내건축, 조경 기 능 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송통신	통 신 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 술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 능 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 능 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시설관리	기계시설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 기 능 사 : 설기계정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승강기	
	전기시설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ㅋ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 능 사 : 전기, 승강기	
	화공시설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 : 화학분석 기 능 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비 고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나. 연구・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	기 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농촌지도	농업기계		
공업연구	전 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기기 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금 속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 유	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	화 공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 학		
	산업경영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 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물 리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산업기사 : 정밀측정, 전자, 에너지관리	
농업연구	농 식 품 개 발	기 술 사 : 식품, 농화학, 축산 기 사 :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축산 산업기사 : 식품, 축산, 유기농업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영양사, 위생사
	작 물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농촌지도	농 업		
농업연구	원 예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농촌지도	원 예		
농업연구	농업환경	기 술 사 :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 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산업기사 :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산업곤충	기 사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농촌지도	잠 업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농업연구	작물보호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촌생활	기 술 사 :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어업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기 사 :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섬유,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	농촌생활		
농촌지도	농업경영		
농촌지도	농촌사회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청소년지도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농업연구	농 공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농업연구 농촌지도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녹지연구 농촌지도	임 업 조 경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수의연구 농촌지도	수 의 가축위생	기 술 사 : 축산 기 사 : 축산 산업기사 : 축산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해양수산연구 어촌지도	해양환경 수산자원 어 촌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연구	수산양식	기 술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 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수산공학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수산가공	기 술 사 : 수산제조, 식품 기 사 :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식품	
보건연구	의 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 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보건연구	공중보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환경연구	환 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시설연구	토 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농촌지도	농업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설연구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방재안전연구	안전관리 재난관리	기 사 : 방재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19]

1. 일반직 공무원의 가산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34조 관련)

가. 5급부터 9급까지

계급 / 직렬	5급	6급·7급	8급·9급
행정, 세무, 교육행정, 사회복지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전 산	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가공, 정보보안,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철도차량, 조선, 항공기관, 항공기체, 차량, 금형, 공장관리, 품질관리, 용접, 전기응용,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기계안전, 소방, 소음진동, 산업계측제어, 건축기계설비) 운송용조종사	기사(일반기계, 기계설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승강기, 농업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조선, 항공, 자동차정비, 그린전동자동차, 사출금형설계, 프레스금형설계, 품질경영, 교통, 용접, 전기, 전기공사,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 전자,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에너지관리, 건축설비, 소음진동,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능장(기계가공, 건설기계정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금형제작, 배관, 판금제관, 용접, 전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가스, 소음진동)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기계조립,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기계정비, 승강기, 농업기계, 생산자동화,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조선, 항공, 자동차정비, 사출금형, 프레스금형, 품질경영, 영사, 교통, 배관, 판금제관, 용접, 전기, 전기공사, 반도체설계, 컴퓨터시스템응용가공, 전자계산기제어, 전자,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산업안전, 소방설비 〈기계분야〉, 소음진동, 철도운송산업기사, 건축설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공 업 (일반전기)	기술사(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품질관리, 컴퓨터시스템운용, 소방, 전기안전, 방사선관리, 원자력발전)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광학,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 전자, 임베디드, 품질경영, 승강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안전, 소방설비 〈전기분야〉, 원자력, 에너지관리) 기능장(전기, 전자기기,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광학기기, 반도체설계, 의공, 컴퓨터시스템응용가공, 전자계산기제어, 전자, 품질경영, 승강기, 사무자동화, 산업안전, 소방설비 〈전기분야〉, 에너지관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계급 / 직렬	5급	6급·7급	8급·9급
공 업 (금 속)	기술사(금속가공, 금속재료, 금속제련, 세라믹, 용접, 표면처리, 품질관리, 비파괴검사)	기사(금속재료, 용접, 품질경영, 누설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기능장(금속재료, 압연, 제강, 제선, 판금제관, 주조, 용접, 표면처리)	산업기사(금속재료, 재료조직평가, 판금제관, 주조, 용접, 표면처리, 품질경영, 방사선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공 업 (섬 유)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섬유, 의류, 품질경영, 산업안전)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한복, 품질경영, 산업안전)
공 업 (일반화공) (가 스)	기술사(화공, 품질관리,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세라믹, 식품, 가스, 화공안전)	기사(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생물공학, 품질경영, 화약류관리, 식품, 가스, 산업안전) 기능장(위험물, 가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품질경영, 화약류관리, 식품, 가스, 산업안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공 업 (자 원)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광해방지, 지질 및 지반, 해양)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광해방지, 응용지질,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해양환경)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농화학, 시설원예, 종자, 식품)	기사(시설원예, 유기농업, 종자, 생물공학, 식품, 식물보호, 바이오화학제품제도)	산업기사(유기농업, 종자, 식품, 식물보호)
농 업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농화학)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 지	기술사(산림, 조경, 농화학, 시설원예, 종자, 자연환경관리)	기사(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임업종묘, 조경, 시설원예, 종자, 화훼장식, 자연생태복원, 토양환경) 기능장(산림)	산업기사(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자연생태복원, 임업종묘,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수산 (일반수산 일반해양)	기술사(수산양식, 어로, 해양, 수산제조, 식품,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해양환경,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수산양식, 어로, 해양조사, 식품,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해양수산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기술사(조선, 기계, 산업기계설비)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기사(조선, 항로표지, 일반기계)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컴퓨터응용가공)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보 건	기술사(식품,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소음진동,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특수),	기사(식품,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식품,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보 건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의무기록사, 방사성동위원소치급자(일반),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계급 / 직렬	5급	6급·7급	8급·9급
식품위생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포장, 품질관리, 축산, 방사선관리)	기사(수산제조, 식품, 포장, 품질경영, 축산)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식품, 포장, 품질경영, 축산)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응급구조사 1급, 의지·보조기기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의공	응급구조사 2급, 의공
의 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호사, 조산사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 경	기술사(대기관리, 소음진동, 수질관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기상예보,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해양, 조경, 농화학, 산림, 산업위생관리, 화공안전, 화공,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온실가스관리, 기상, 기상감정, 토목, 건설재료시험, 응용지질, 해양환경,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화공, 식물보호, 생물분류, 광해방지)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산업기사(농림토양평가관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폐기물처리, 온실가스관리, 건설재료시험, 토목, 해양조사,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화공, 식물보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항 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방송통신, 무선설비, 정보통신) 기능장(통신설비)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방송통신, 무선설비, 정보통신) 자가용조종사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교통, 도시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시공, 항만 및 해안, 조경, 지질 및 지반) 건축사	기사(교통, 도시계획, 건축, 토목,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응용지질, 교통, 방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교통, 건축, 건축일반시공, 토목,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시 설 (일반토목)	기술사(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지적, 지질 및 지반, 철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항만 및 해안, 조경, 교통, 도시계획, 건설안전, 광해방지)	기사(토목, 건설재료시험, 지적, 응용지질,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조경, 교통, 방재, 도시계획, 건설안전, 광해방지)	산업기사(토목, 건설재료시험, 지적,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조경, 교통, 건설안전)
시 설 (건 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계급 / 직렬	5급	6급·7급	8급·9급
시 설 (지적, 측지)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시 설 (교통시설)	기술사(교통, 도시계획,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적, 철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조경,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기사(교통, 도시계획, 토목, 건설재료시험, 지적,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건설안전, 콘크리트, 응용지질)	산업기사(교통, 토목, 건설재료시험, 지적,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건설안전, 콘크리트)
방재안전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송통신 (통신사, 통신기술, 전자통신기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	산업기사(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자계산기제어, 전자,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가공, 무선설비)
위 생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포장, 품질관리, 축산) 기사(수산제조, 식품, 포장, 품질경영, 축산)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식품, 포장, 품질경영, 축산) 환경기능사
시설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시설관리 (기계시설)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건축기계설비, 소음진동)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건축설비, 설비보전, 소음진동,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건축설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능사(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승강기, 온수온돌 · 설비보전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계급 / 직렬	5급	6급·7급	8급·9급
시설관리(전기시설)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능사(전기, 승강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시설관리(화공시설)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토목운영		기술사(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지적, 지질 및 지반, 철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항만 및 해안, 조경, 교통, 도시계획, 건설안전) 기사(토목, 건설재료시험, 지적, 응용지질,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조경, 교통, 도시계획, 건설안전)	산업기사(토목, 건설재료시험, 지적,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조경, 교통, 건설안전)
건축운영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기사(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사	산업기사(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통신운영		기술사(정보통신) 기사(전자전파통신, 정보통신, 전자, 방송통신, 무선설비)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	산업기사(전자전파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자계산기제어, 전자,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기운영		기술사(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품질관리, 소방, 전기안전) 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안전, 소방설비 〈전기분야〉) 기능장(전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안전, 소방설비 〈전기분야〉)
기계운영		기술사(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철도차량, 차량, 금형, 공장관리, 품질관리, 용접, 정보통신, 기계안전, 소방, 건축기계설비, 소음진동) 운송용조종사 기사(일반기계, 기계설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농업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그린전동자동차, 사출금형설계, 프레스금형설계, 품질경영, 정보통신,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승강기, 용접, 건축설비, 설비보전,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능장(기계가공, 건설기계정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금형제작, 배관, 판금제관, 용접)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기계가공조립,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기계정비, 승강기, 생산자동화,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사출금형, 프레스금형, 품질경영, 배관, 판금제관, 농업기계, 용접, 정보통신, 산업안전, 소방설비 〈기계분야〉 , 영사, 건축설비, 소음진동, 에너지관기,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계급 / 직렬	5급	6급·7급	8급·9급
화공운영		기술사(화공, 품질관리, 화약류관리, 세라믹, 식품, 가스, 화공안전) 기사(화공, 화약류제조, 품질경영, 화약류관리, 식품, 가스, 산업안전) 기능장(위험물, 가스)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품질경영, 화약류관리, 식품, 가스, 산업안전)
가스운영		기술사(화공, 가스, 화공안전) 기사(화공, 가스, 산업안전) 기능장(위험물, 가스)	산업기사(위험물, 화약류관리, 가스)
선박항해운영 선박기관운영		기술사(조선, 기계, 산업기계설비)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표지) 1·2·3·4급 항해사, 1·2·3·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컴퓨터응용가공)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농림운영		기술사(산림, 조경, 농화학, 종자, 축산, 식품) 기사(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임업종묘, 조경, 종자, 축산, 식품, 생물공학,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축산, 식품)
보건운영		기술사(대기관리, 소음진동,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식품, 방사선관리)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식품)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위생관리) 임상관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나. 연구사

계급 / 직렬	연 구 사
공업연구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광해방지,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철도차량, 조선, 항공기관, 항공기체, 차량, 금형, 금속가공, 금속재료, 금속제련, 세라믹, 용접, 표면처리, 화공, 섬유, 의류,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공장관리, 포장, 품질관리, 제품디자인, 지질 및 지반, 해양, 컴퓨터시스템운용, 정보통신, 식품, 가스,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전기안전, 화공안전, 비파괴검사, 방사선관리, 원자력발전, 건축기계설비, 소음진동)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광해방지, 일반기계, 기계설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승강기, 농업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조선, 항공, 자동차정비, 그린전동자동차, 사출금형설계, 프레스금형설계, 금속재료, 용접, 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생물공학, 섬유, 의류,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광학,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 전자, 임베이드, 포장, 품질경영,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컬러리스트, 응용지질, 해양자원개발, 해양환경,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방송통신, 무선설비, 정보통신, 식품,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누설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원자력, 에너지관리, 반도체 설계, 건축설비, 소음진동,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농업연구	기술사(농화학, 시설원예, 종자, 조경, 섬유, 의류, 식품,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기사(시설원예, 유기농업, 종자, 조경, 메카트로닉스, 생물공학, 섬유, 의류, 식품, 식물보호,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위생사, 영양사, 평상교육사 1·2급
농업연구 (잠업곤충)	기술사(생사)
농업연구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기사(축산, 생물공학,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
농업연구 (농 공)	기술사(품질관리, 농어업토목,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조경, 도시계획,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차량, 금형, 용접, 가스,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전기안전, 화공안전, 비파괴검사 기사(품질경영, 토목, 조경, 도시계획, 일반기계, 기계설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 농업기계, 메카트로닉스, 사출금형설계, 프레스금형설계, 용접,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누설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농업연구 (농식품개발)	기술사(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식품, 유기농업, 축산, 생물공학) 영양사, 위생사
녹지연구	기술사(산림, 농화학, 시설원예, 종자, 조경) 기사(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임업종묘, 시설원예, 종자, 조경, 화훼장식)
해 양 수산연구	기술사(수산양식, 어로, 해양, 수산제조, 식품,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해양환경, 생물공학,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보건연구	기술사(식품,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소음진동,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식품,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계급 / 직렬	연 구 사
환경연구	기술사(대기관리, 소음진동, 수질관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해양, 조경, 농화학, 산림, 산업위생관리, 화공안전, 기상예보, 화공)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온실가스관리, 기상, 토목, 건설재료시험, 응용지질, 해양환경,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화공, 식물보호, 생물분류) 의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 환경측정분석사
시설연구(토 목)	기술사(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지적, 지질 및 지반, 철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항만 및 해안, 조경, 교통, 도시계획, 건설안전) 기사(토목, 건설재료시험, 지적, 응용지질,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조경, 교통, 도시계획, 건설안전)
시설연구(건 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기사(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사
방재안전연 구	기사(방재)

다. 지도사

계급 / 직렬	지 도 사
농촌지도	기술사(농화학, 시설원예, 종자, 축산, 산림,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지적, 지질 및 지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조경, 도시계획,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차량, 금형, 용접, 섬유, 의류, 식품,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교통) 기사(시설원예, 유기농업, 종자, 축산,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임업종묘, 토목, 건설재료시험, 지적, 응용지질,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일반기계, 기계설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 농업기계, 메카트로닉스, 자동차정비, 사출금형설계, 프레스금형설계, 용접, 섬유, 의류,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식품,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토양환경, 화훼장식, 농화학, 식물보호, 정밀측정, 승강기, 교통) 수의사, 청소년지도사,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생산기사 2급(1999. 3.27. 이전 취득.)
어촌지도	기술사(수산양식, 어로, 해양, 수산제조,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해양공학, 해양자원관리, 해양환경, 수산제조, 수질환경, 해양자원개발)

비고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의 관계 규정에 따라 신규임용 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에 가산점을 평정할 수 없다.

2. 명칭변경, 통합, 폐지된 자격증으로써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자격증으로 인정한다.

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 2급 자격증은 정수사업소 근무자에 한정하여 가산점을 평정한다.

2. 자격증의 등급별 가산점

구 분	가산점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 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5점
해당 직렬의 바로 아래 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25점

[별표 21]

1. 교류직위 등 특정직위 근무경력 가산점(제34조의2 관련)

구 분	부여기준	가산점	비 고
시 · 군 · 구 교류	인사교류(영 제27조의5)에 임용된 5급 이하 공무원	교류 임용 1년 경과 후 최초 교류 임용된 날부터 1개월마다 0.01점	최대 0.36점

2. 전문직위 근무경력 가산점(제34조의2 관련)

부여기준	가산점	비 고
전문직위로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	- 3년 초과 4년 이하 : 1개월 마다 0.02점 - 4년 초과 5년 이하 : 1개월 마다 0.025점 - 5년 초과 : 1개월 마다 0.03점	최대 1.2점

3.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근무경력 가산점(제34조의2 관련)

부여기준	가산점	비 고
재난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없이 1년 이상 근무한 5급 이하 공무원 (단, 대규모 재난 대응·복구 전담자로 지정된 경우 지정일부터 부여)	재난·안전관리 업무 전담직위 지정 1년 경과 후 지정일부터 1개월마다 0.01점	최대 0.5점

* 재난·안전 관련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소하천정비법」,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재해구호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풍수해보험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성) ① (생 략)	제4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실·국장과 보건소장,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및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으로 한다.	② ---------- ---------- ---------- 국장---------- ---------- ---------- ---------- --------.
제12조(응시수수료) ① (생 략)	제12조(응시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②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③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신 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신 설>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부가족 중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신 설>	3.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제14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14조(응시연령) ---------- 18세 이상이어야 ---.
1. 7급 이상: 20세 이상	<삭 제>
2. 8급 이하: 18세 이상	<삭 제>
제18조(시험위원) ① ~ ③ (생 략)	제18조(시험위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위원을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고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 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으로 ----------.
<신 설>	제23조의2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

	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임용점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④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점검 대상이 발생하면 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하며, 점검의 결과가 제출된 때에 임용점검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⑦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⑧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 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제34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①「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	제34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①----------

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가산점 대상이 되는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별 가산점은 별표 19와 같고, 언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가산점은 별표 20과 같다.	---------- ---------- ---------- -------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근무경력의 가산점)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산점 부여 기준·요건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의2(근무경력의 가산점)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가산점 부여 요건 및 가산점은 별표 21과 같다. 이 경우 가산점 평정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항에 따른다.
제34조의3(실적 가산점) ①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부여하는 실적 가산점은 3점의 범위에서 부여할 수 있고, 가산점의 부여 기준·요건 및 평정 대상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의3(실적 가산점) ① ---------- ---------- ------- 2.4점의---------- ---------- ---------- ---------- ----.
②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실적 가산점을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할 때에는 평정규칙 제27조제3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되, 3점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평정규칙 제27조제3항 중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은 각각 “실적 가산점”으로 본다.	<삭 제>

관계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법

제32조(시험의 실시) ① 6급·7급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 및 직군·직렬의 분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시·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도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한다.

②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과 6·7·8급 공무원에의 승진시험, 6·7·8·9급 공무원의 전직시험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③ 5급 이상 공무원의 각종 임용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한다.

④ 임용예정직과 관련이 있는 자격증 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당 시·도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⑤ ~ ⑦ “생략”

제33조(평등의 원칙) 공개경쟁에 따른 임용시험은 같은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시험의 시기와 장소는 응시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34조(수험자격) 각종 시험의 수험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신규임용시험의 가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② 제1항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구체적 대상, 가산 점수, 가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에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을 줄 수 있고,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1. 자격증이 있는 경우
2.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규칙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5.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6. 탁월한 근무실적 또는 공헌이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가산점 및 감점 평정기준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 ⑧ <생 략>

제55조의3(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②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임용되는 특수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하되,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체하는 시험과목은 가산대상 과목에서 제외하며, 가산대상자격증 및 가산비율·방법·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4조(응시수수료) ①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에 붙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1.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각각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입인지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실시하는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입증지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제64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 그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시험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응시연령) ①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을 신속하게 보충하여야 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대해서만 응시연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응시수수료) ① 공무원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채용시험: 1만원

1의2.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만원

2. 6·7급 공무원채용시험: 7천원

3. 8·9급 공무원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기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그 금액을 제47조에 따라 해당 시험을 공고할 때 함께 공고해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면제대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5에 규정된 직급의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 여부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①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중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 ④ (생 략)

제31조(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우대) ① (삭 제)

②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에서 별표 12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별표 5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1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①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검정시험 합격확인서 등(이하 “자격증등”이라 한다)을 소지한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1. 「자격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자격증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인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제1호에 따른 자격증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3. 그 밖에 임용권자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또는 검정시험 합격확인서 등

② 삭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등(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 종목의 하위 등급 자격증을 포함한다)을 소지한 경우에는 가산점을 줄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로서 영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
2. 영 제17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
3.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시험과목의 전부를 면제받거나 자동적으로 취득한 자격증
4. 유효기간이 지난 자격증등
5. 승진임용 시 이미 가산점이 반영된 자격증등

④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자격증등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산점이 높은 하나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줄 수 있다.

⑤ ~ ⑥ 삭제

제24조(근무경력 가산점) ①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가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제1호의 경우에는 연구사 및 지도사가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해당 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

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1개월마다 가산점을 줄 수 있다.

1.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한 경력
2.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 근무한 경력
3. 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

② ~ ③ <삭제>

④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1개월마다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

1.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
2. 영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

⑤ 삭제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1개월마다 부여하는 가산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개월 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

⑦ 제4항에 따른 근무경력에 따른 가산점 평정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항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

제25조의2(실적 가산점) ① 임용권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 대상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 또는 공헌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25조의3(가산점 부여 기준의 공개 등) ①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 기준·요건 및 가산점 평정 대상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② 임용권자는 가산점의 부여 기준·요건 및 가산점 평정 대상 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신설 및 폐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재난의 대응·복구를 위해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 이후부터 변경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의 견 제 출 서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